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研究

政策研究 96-17

金南斗

1996.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研究

金南斗

1996.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21세기를 눈앞에 둔 1990년대 후반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내경제의 구조개선과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그 동안 우리경제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증대를 의미하는 OECD가입이 1996년에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가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國際社會의 主要國家로서 우리는 개인의 인권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와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제반 국제규범을 보다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동안 경제발전의 성과가 여타 개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확대도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도입문제는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변화와 함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주요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와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1970년대 초부터 도입하였던 GSP는 개도국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상 특혜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방식 중의 하나로 자리잡았다. 주지하다시피 이 제도는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의 무역·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 동안 이 제도의 최대 수혜국 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이제 이 제도를 통하여 개도국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에서는 GSP와 관련된 최근의 與件變化와 國際的인 制度改善 努力과 우리나라의 GSP 導入與件을 분석하고, 이 제도의 제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선진국의 제도내용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方案들의 의미를 미리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보고서를 집필한 인제대학교의 김남두 교수의 노고에 감사하며, 집필자는 연구수행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특히 재정경제원의 백상현 사무관 그리고 본원의 조종화 박사와 송유철 박사는 유익한 검토의견을 주었으며, 본원의 안태경 사서는 자료수집을 적극 도와주었고, 김정아 연구조원은 원고의 정리와 타자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나라의 GSP 관련제도의 검토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년 12월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 莊 熙

目 次

I. 序 論	9
II. GSP의 概要와 最近動向	11
1. GSP의 概要	11
(1) GSP의 概念	11
(2) GATT와 開途國 貿易問題	13
(3) UNCTAD와 GSP의 展開過程	15
(4) GSP의 法的地位와 GATT	16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18
(1) GSP 供與國과 受惠國	18
(2) GSP 受惠輸入	20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25
(1) 與件變化와 GSP의 性格 變化	25
(2) 特惠마진의 縮小	27
(3) 制度改善의 方向	31
4. GSP效果의 研究 事例	37
(1) 몇가지 概念	37
(2) GSP效果에 관한 研究結果	39
III. 韓國經濟와 GSP導入與件	43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43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46
(1) 開途國의 概念과 韓國經濟	46

(2) 開途國地位 變化時의 影響	48
(3) 對應 方向	49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49
(1) GSP供與의 意味와 影響	50
(2) 國際的 與件	52
(3) 國內經濟的 與件	54
IV.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59
1. 受惠 對象國	59
(1) 美國 GSP	61
(2) EU GSP	62
(3) 日本 GSP	63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63
(1) 美國 GSP	64
(2) EU GSP	68
(3) 日本 GSP	70
(4) 特惠마진	70
3. 受惠의 制限	72
(1) 美國 GSP	73
(2) EU GSP	77
(3) 日本 GSP	78
4. GSP 卒業	81
(1) 美國 GSP	81
(2) EU GSP	84
(3) 日本 GSP	89

5. 原產地 規程	89
(1) 原產地 規程의 構成要素	90
(2) 美國 GSP	93
(3) EU의 GSP	96
(4) 日本 GSP	97
6. GSP制度의 安定性	98
(1) 美國 GSP	99
(2) EU GSP	99
(3) 日本 GSP	100
V. 結 論	101
1. GSP의 評價와 展望	101
2. 要約 및 結論	102
(1) 導入時期	103
(2) 導入 시나리오	104
(3) 構成項目別 方向	106
參 考 文 獻	111

表 目 次

<表 1> GSP 供與國別 受惠對象國의 數	19
<表 2> OECD의 GSP供與國別 GSP輸入 推移	20
<表 3> 主要 GSP供與國의 GSP관련 輸入(1993년)	22
<表 4> OECD 國家들의 年平均 輸入增加率	23
<表 5> 主要國의 GSP受惠國으로부터의 輸入(1993년)	24
<表 6> 主要國 GSP의 受惠集中	25
<表 7> 主要 先進國의 UR 關稅讓許 內容	28
<表 8> UR關稅引下에 따른 主要國의 部門別 GSP마진 變化	30
<表 9> 主要國의 UR關稅化 農産物의 輸入(1992年)	32
<表 10> 主要國의 GSP擴大可能 品目の 輸入 (1992年)	34
<表 11> 先進國 GSP輸入의 受惠國別 狀況(1986년)	44
<表 12> 우리나라의 GSP 受惠實績	45
<表 13> 美國·日本·EU의 GSP受惠 對象國 比較	60
<表 14> 美國 GSP의 競爭力 條件의 金額限度와 極小條項 限度	77
<表 15> 美國 GSP의 國別卒業에 적용되는 1人當 GNP	82
<表 16> EU GSP의 國別 部門別 卒業 對象	87
<表 17> OECD會員國의 GSP 比較	100
<表 18> 主要國의 GSP導入 당시의 經濟水準	103

I. 序 論

우리나라經濟는 1960년대 이래의 역동적인 성장의 결과 GNP규모, 수출입규모 그리고 주요 공산품의 생산에서 세계 10대 경제국의 문턱에 다다랐으며, 1996년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들의 클럽인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OECD 加入은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國際的 位相增大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향후 우리 경제를 國際的 規範에 맞게 개방적으로 운영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발전정도에 걸맞는 役割을 能動的 積極的으로 담당할 것임을 國際社會에 約束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를 다짐하는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다.

주요국의 일원으로서 특히 OECD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는 많은 부문에서 제도와 정책운영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經濟協力이며 특히 후진국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援助를 확대하고, 一般特惠關稅制度(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를 도입하여 對開途國 製品의 輸入에 대한 關稅特惠를 제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UN 무역개발회의 (UNCTAD :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에서 논의가 시작된 후, UNCTAD와 OECD에서의 합의 과정을 거쳐 1971년부터 운용되어 온 선진국들의 GSP는 그 동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협소한 국내시장과 빈약한 부존자원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수출증대를 통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필요한 해외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하여 국내생산 능력을 키운다는 對外指向的 發展戰略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의 수출증대와 經濟發展에 GSP는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

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GSP혜택에서 졸업하기 전까지 세계에서 GSP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의 하나였다.

이제 주요 선진국의 일원으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도 우리가 해왔던 것과 같이 개도국들이 무역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도록 GSP혜택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이며, 따라서 이 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우리는 남다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SP의 도입과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GSP제도의 기본 의의와 발전과정을 평가해 보고 주요국의 제도 내용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GSP 도입이 우리경제 특히 우리의 무역에 미칠 효과를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의 GSP 도입시에 필요한 부문별 대안들을 사전에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第Ⅱ章에서는 GSP제도의 의의와 전개과정 및 GATT내의 법적지위를 개괄해 보고 GSP와 관련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본다. 第Ⅲ章에서는 우리의 GSP 수혜실적과 향후 GSP 도입 여건을 검토한다. 도입여건과 관련하여, OECD 가입과 개도국 지위에 관해서도 살펴본다. 第Ⅳ章에서는 GSP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별로 선진국들의 운용실태를 비교 평가한다. 마지막 章에서는 본문에서의 검토 내용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II. GSP의 概要와 最近動向

1. GSP의 概要

(1) GSP의 概念

一般特惠關稅制度(GSP :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란 개도국의 수출증대와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최혜국대우(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등의 관세상 특혜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당초 GSP는 1968년 제2차 UNC - TAD 총회의 결의에서 사용된 “일반화된 비호혜적이며 무차별적인 특혜제도(System of Generalized, Non-reciprocal and Non-discriminatory Preferences)”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GSP에 의한 特惠(preferences)」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의미한다. 多者間自由貿易 창달을 이념으로 하는 전후 국제무역질서를 규정한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의 제1조는 最惠國(MFN : Most Favoured Nation)대우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GATT 체결국은 다른 모든 체결국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므로, 특정 국가에 대한 특혜의 제공이나 차별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국가에 무역상 어떤 혜택을 부여하면 원칙적으로 여타 모든 체결국에게도 그러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GSP에 의하여 개도국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는 GATT 제1조에도 불구하고 인정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GSP의 「일반적(generalized)」이란 말의 의미는 GSP 도입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특혜제도들이 지리적으로 혹은 역사적으로 특

수한 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에만 한정되던 특수한 특혜제도였으므로 이와 구분하기 위하여, GSP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개도국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GSP 이전의 기존 특혜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GATT 성립 이전부터 있던 특혜제도로서 1947년 GATT 출범 때부터 특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제도인데 이에 영연방간의 특혜, 프랑스연합간의 특혜, 베네룩스 관세동맹, 미국-필리핀간 특혜, 칠레-인접국간 특혜, 우루과이-파라과이간 특혜, 레바논-시리아-인접국간 특혜 등이 해당된다. 다른 하나는 GATT 성립 이후에 생긴 특혜제도로서, 파푸아뉴기니에 대한 특혜, EEC-아프리카 연합간의 야운데협정에 의한 특혜, EEC-나이지리아간의 특혜, EEC-터키간의 특혜, EEC-東아프리카 3국연합간 특혜 등이 이에 해당된다.

「非互惠的(non-reciprocal)」이란 선진국들이 開途國에 대하여 특혜를 공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개도국에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는 GATT 무역협상에서 협상참여국들이 상호간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서로 貿易障壁을 낮춤으로써 호혜적인 무역이익을 추구한다는 GATT의 호혜주의 혹은 相互主義(reciprocity)원칙의 예외라 할 수 있다.

「無差別的(non-discriminatory)」이란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 등 역내 국가간의 무역자유화를 위하여 역내 제품에만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地域經濟統合協定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역외국가에 대한 差別을 排除한다는 의미이다. 앞에서 설명한 일반적이라는 의미 속에 그 뜻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GSP는 개도국제품에 대한 관세특혜를 통하여 개도국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개도국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이라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GSP의 구체적 역할은 개도국의 산업화, 개도국 수출상품의 다양화 및 이를 통한 수출판매 대금의 증가를 돕는 것이었으며, GATT가 개도국의 실질적인 무역확대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던 당시로서는 GSP가 개도국의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기대되었다.

한편 GATT 제24조에 근거하여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무역협정(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등)과 비교해 볼 때, GSP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¹⁾ 첫째, GSP는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developmentalist rationale).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역내무역자유화가 기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GSP는 비호혜적인 제도인데 비하여,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역내회원국간의 호혜적인 자유화를 도모한다. 셋째, GSP는 개도국에게 일방적으로 특혜를 공여하지만 또한 일방적으로 특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제도의 내용이 빈번히 바뀔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지역무역협정에서는 자유화의 내용이 후퇴할 수는 없으며 그 내용이 변하기 어렵다. 넷째, GSP는 반드시 자유무역촉진을 위하여 고안된 것은 아니므로 GSP의 특혜관세가 항상 영은 아니며, 특혜관세율은 일반관세율의 일정수준으로 정해진다. 그러나 지역무역협정은 적절한 이행기간을 거쳐 관세율의 철폐 등 무역장벽의 철폐가 요구된다. 다섯째, GSP는 실질적인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rade)을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며 따라서 관련 당사국간의 자유무역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반면 GATT 24조는 지역무역협정이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모든 부문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2) GATT와 開途國 貿易問題

GSP가 시행되기 전의 GATT체제하에서는 국제무역이 개도국의

1) OECD, Trade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 How Much are They Worth and for Whom ?. 1995. P. 3.

무역증대에 그리 만족할 만한 성과를 주지 못하였다. 당시 무역체제에 대하여 개도국들이 불만과 관심을 보였던 사항은 선진국들이 농업부문의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계속한다는 점과, 개도국의 주요 수출상품이었던 일차산품의 가격이 불안정했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개도국의 수출판매소득이 그들의 공산품 수입수요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여 개도국들이 무역을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개도국의 관심과 우려를 반영하여, GATT에서는 국제무역의 추세와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하여 하벌러(Gottfried Haberler)교수 책임 하에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을 구성하였다. 1958년 발표된 하벌러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① GATT 주관 하의 무역자유화는 개도국 수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② 개도국이 많이 수출하는 품목의 관세율은 평균적으로 선진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보다 높았고, ③ 선진국의 가공도에 따른 關稅率 隔差(tariff escalation)때문에 개도국들은 제조업 발전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벌러 보고서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GATT가 향후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선·후진국간에는 심각한 견해차가 나타났다. 이 문제는 1963년 GATT 각료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취급되었는데 선진국들은 개도국 수출품에 대한 모든 무역장벽을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언에 그치고 이를 실천할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1965년 채택된 GATT의 제4부(Part IV)는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소득증대를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선진국 측이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즉, GATT 제4부는 기본적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 관심부문에 대한 무역자유화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약속하였으며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있다. 따라서 GATT 제4부의 커다란 의미는 개도국에 대하여 호혜주의원칙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으로써 비호혜주의를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GATT내에서 개도국 입장에 대한 논의가 선언과 규범으로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던 1960년대중, 동일한 의제는 UN에서도 논의되고 있었다. UN은 1964년 무역과 개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거기서 UNCTAD가 설립되었다.

(3) UNCTAD와 GSP의 展開過程

GSP 논의는 UNCTAD와 함께 시작되었다. 즉, 개도국에 대한 관세상 특혜공여 문제는 1963년 GATT 각료이사회에서 최초로 거론되었지만, GSP는 1964년 제1차 UNCTAD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UNCTAD의 초대 사무총장이던 프레비쉬(Raúl Prebisch)가 「開發을 위한 새로운 貿易政策을 指向하여」(Towards a New Trade Policy for Development)라는 보고서²⁾에서 제3세계의 공업발전의 계기를 주기 위하여 선진국들이 개도국 상품에 대하여 특혜적인 관세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적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제1차 UNCTAD 총회는, 1964년에 UN貿易 및 開發會議을 열자는 내용의 1962년 UN총회 결의에 따라 1964년 3월 제네바에서 개최되었으며, 그 후 UNCTAD는 UN총회 직속의 상설 기관이 되었다.

프레비쉬 보고서의 발표 이후, 선진국들은 1968년 OECD 貿易委員會에 特惠特別委員會를 설치하고 GSP에 관한 선진국들의 입장을 정립하고 선진국간 공동보조를 도모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개도국

2) 프레비쉬 보고서는 開發國의 수출이 일차산품에 치중되어 있으며 일차산품의 수요가 정체되어 있고 일차산품의 국제가격이 불안정하여 개도국이 慢性的인 貿易赤字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개도국의 工業品 수출 증가가 工業化를 촉진하여 결국 일차산품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開發國들에게 工業化를 추구할 만큼 보다 큰 시장을 제공해야 하며, 또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불리한 開發國에게 特惠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함.

들은 1967년 이른바 제1차 77그룹회의를 알지에서 개최하여 GSP에 관한 개도국 측의 기본 입장을 모색하여 알지에 현장을 채택하였다. 알지에 현장에 포함된 개도국 측의 주요 입장(77그룹 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① 제2차 UNCTAD 총회에서 GSP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
- ② 후발개도국에 대하여 특별조치를 부여할 것
- ③ 특혜 대상품목은 공산품 외에도 가공 혹은 반가공된 1차산품을 포함할 것
- ④ 특혜관세는 모든 선진국이 모든 개도국에 공여할 것
- ⑤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도입할 것
- ⑥ 기존 특혜제도들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보상할 것
- ⑦ 특혜 공여기간은 20년으로 하되 종료 시에 재검토할 것
- ⑧ 선진국은 원료의 수입제한 등의 조치로 개도국의 특혜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 ⑨ UNCTAD 산하에 GSP 관리기구를 설치할 것

그 후 UNCTAD내에는 GSP 문제를 담당하는 特惠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가 구성되고 여기에서 선진국안과 77그룹안을 절충한 후 1970년 9월 UNCTAD의 貿易開發委員會(TDB : Trade and Development Board)가 합의안을 통과시켜 GSP실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루어졌다.

(4) GSP의 法的地位와 GATT

GSP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던 때부터 선진국들은 GSP가 GATT 제1조에 규정한 세계무역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 즉 무차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GSP가 GATT의 적용면제(웨이버)

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개도국들은 GATT 제1조의 수정 혹은 새로운 장의 신설로 GSP에 합법성을 부여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문제는 UNCTAD의 결의에 따라 「早期 적용면제 獲得」으로 귀결되어 1971년 6월 25일 GATT 제25조 5항에 의하여 “GATT 1조에 대한 적용면제”를 포괄적으로 획득함으로써 GSP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GSP의 法的地位 問題는 1974년에 시작된 GATT의 동경라운드 多者間貿易協商(MTN)에서 개도국들이 규정 검토를 제기함에 따라, GATT 貿易協商委員會(TNC)내에 프레임워크 협상그룹이 설치되고 여기에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문제를 다시 토의하였다.

동경라운드 프레임워크 협상그룹의 협상 결과, ① 차별적이며 유리한 대우(차별적 우대), 상호주의 및 개도국의 보다 충실한 참여(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일명 Enabling Clause), ② 국제수지방어 목적의 무역조치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rade Measures Taken for Balance of Payments Purposes), ③ 개발목적의 세이프가드 행동(Safeguard Action for Development Purposes), ④ 고지, 협의, 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Regarding Notification, Consultation, Dispute Settlement and Surveillance) 등 4개의 프레임워크 협약이 1979년 채택되었다. 그 중 첫 번째의 개도국 우대조치에 관한 협약에서, GSP제도는 GATT 제1조에도 불구하고 GATT적용면제의 취득에 관계없이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그밖에도 이 협약에서, 개도국들 간의 지역협정에 대한 우대조치, 동경라운드의 다자간무역협정(MTN Codes)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규정하였다. 동시에 개도국에 대하여 경제발전에 상응하여 GATT상의 권리·의무에 더욱 충실하게 참여할 것을 규정하는 소위 개도국졸업 조항을 규정하였다.

1995년 출범한 WTO체제에서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부여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을 소득수준에 따라서 몇 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도 차등적인 대우'를 제공한다는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

2. 先進國 GSP의 性格과 運用現況

(1) GSP 供與國과 受惠國

선진국의 GSP공여는 1971년부터 시작되었다. 1970년 9월 UNC - TAD의 무역개발위원회에서 GSP 실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1971년 7월 EC 6개국이 최초로 GSP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日本도 1971년 도입하였으며, 美國은 1976년에 GSP를 도입하였다. 가장 최근에 GSP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蘇聯邦에서 독립한 벨라루스로서 1995년부터 GSP를 공여하기 시작하였다.

1996년 현재, OECD 28개 회원국중, 아이슬란드,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25개국과 불가리아, 벨라루스, 러시아 등 東유럽 3개국 등 28개 국가가 GSP를 공여하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EU) 15개국은 하나의 共同貿易制度를 운용하고 있어 단일 GSP를 가지므로, 세계적으로 14개의 GSP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할 수 있다.

GSP특혜의 공여기간은 당초 개도국들이 20년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GSP 공여국인 선진국들은 대체로 약 10년을 주기로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1993년까지 1976~1983년간과 1984~1993년간 각각 제1기와 제2기를 마친 이후, 제3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매년 검토를 통하여 일년씩 동 제도를 연장하고 있다. EU의 GSP는 1971년 처음으로 도입한 후 1981년의 개정으로 제 2기에 들어갔으며, 10년후인 1991년에는 과거와 같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되다가, 1995년초부터 새로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EU의

새로운 GSP는 1995년초부터 2004년말까지 기간으로 하는 제3기에 들어갔으며 제3기중 첫단계로서 1998년말까지 4년간 적용되는 새로운 제도가 1995년초에 도입되었다. 일본은 1971년부터 10년단위의 주기로 GSP제도를 시행하여, 1991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의 제3기 GSP가 실시되고 있다. 1974년에 GSP를 도입한 캐나다는 현재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10년간인 제3기 GSP를 운용하고 있다.

GSP 공여국은 제도 도입 이후 제도를 운용해 가는 과정에서 수혜 대상 국가를 조정해왔다. 도입 초기에 제한적인 수의 開發國에 대해서만 特惠를 공여하다가 수혜대상 개도국을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부 개도국에 대해서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경쟁력 기준 등을 통한 졸업제도와 여타 이유로 인한 GSP수혜 배제를 통하여 수혜를 철회한 경우도 있었다. OECD가 집계하여 발표한 바와 같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핀란드 등은 약 150개 국가 및 지역에 GSP를 공여하고 있으며 그 밖의 OECD 국가들은 180~200여개국에 GSP를 제 공하고 있다.

〈表 1〉 GSP 供與國別 受惠對象國의 數

공 여 국	최초 수혜국	'93년말 수혜국	추가 수혜국	수혜배제국
호 주	135	147	19	7
오스트리아	174	214	43	3
캐나다	140	214	78	4
EU	187	202	21	6
핀란드	99	145	46	-
일본	131	187	59	3
뉴질랜드	153	167	18	4
노르웨이	101	192	95	4
스웨덴	166	184	20	2
스위스	191	206	16	1
미국	138	151	40	27

資料 : UNCTAD 사무국(OECD, *Trade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October 4, 1995, TD/TC/WP(95)22/REV1 P. 37에서 재인용).

(2) GSP 受惠輸入

GSP공여국들이 GSP혜택을 부여한 수입규모를 1993년 기준으로 볼 때, 國別로는 EU가 376.9억달러로서 OECD의 전체 GSP공여 수입액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美國 196.6억달러, 日本 138.2억달러, 濠洲 49.4억달러(1991년)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表 2〉 OECD의 GSP供與國別 GSP輸入 推移

(단위 : 백만달러)

공 여 국	1976	1981	1991	1993
미 국	3,160.3	8,395.5	13,675.0	19,559.0
일 본	1,789.5	5,263.3	12,078.1	13,821.0
E U	3,915.9	9,002.0	30,208.0	37,692.7
호 주	412.8	1,979.4	4,944.5	..
오 스트 리아	126.1	251.0	1,633.0	1,464.1
캐 나 다	411.4	857.9	2,675.5	2,962.0
핀 란 드	20.9	108.4	276.6	289.1
뉴 질 랜 드	140.0	246.9	406.2	450.6*
노 르 웨 이	22.4	66.9	463.0	488.0
스 웨 덴	144.8	272.5	1,017.0	781.6
스 위 스	257.1	449.5	1,524.1	1,455.7
OECD 합계	10,401.2	26,893.7	64,083.0	78,963.8

註 : *는 1992년 수치임.

資料 : OECD, *Trade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1995.10.20.

1993년중 GSP수혜 수입액 789.6억달러는 1976년의 99.8억달러의 7.90배에 해당하며, 기간중 연평균 12.9%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증가세는 OECD국가의 GSP受惠國으로부터의 총수입이 7.1%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여 훨씬 높은 수준으로서, 결국 GSP가 개도국의 對선진국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표 3과 표 4 참조).

1976~93년중 GSP특혜 수입의 증가율을 GSP공여국별로 보면,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핀란드 등이 매우 높았다. 반면, 뉴질랜드와

스웨덴, 미국 등의 GSP공여 수입의 증가율은 여타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이 국가들의 전체 수입증가율이나 GSP수혜가능 수입증가율보다는 높게 나타났는 바, 이는 대부분 GSP공여국의 경우 對開途國 GSP수입이 빠른 속도로 增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GSP가 對開途國 무역에 미친 영향을 보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비율을 통하여 무역효과를 살펴보자. 첫째, 受惠可能比率(potential coverage ratio)은 수혜대상국으로부터의 과세대상 총수입(dutiable imports)에서 수혜가능품목(대상품목)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은 GSP수혜대상국과의 무역에서 얼마나 많은 무역이 잠재적으로 GSP적용을 받을 수 있는나를 보여주는 수치이다. 둘째, GSP 利用比率(utilization rate)은 GSP 적용대상품목의 수입 중에서 실제 GSP 혜택을 받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 비율은 GSP가 실제로 활용된 정도를 나타낸다. 셋째, 總有效比率(overall utility ratio)은 총 과세대상수입에서 실제로 GSP 혜택을 받은 수입의 비율로서 GSP가 사후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유효하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준다.

GSP供與의 크기는 수혜가능품목의 수입으로 측정되지 않고 GSP 수혜수입으로 측정되므로, GSP관련 비율을 국별로 비교할 때 그 의미를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첫째, 어떤 국가가 많은 품목들을 최혜국대우원칙에 의한 완전 수입자유화 조치를 취하였다면, 수혜가능비율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수혜가능비율이 높은 다른 국가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나라가 타국에 비하여 GSP 수혜가능품목이 적은 경우 그것은 그 나라가 보다 광범위한 자유무역정책을 취하고 있어 특혜를 제공할 여지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표 3에서 보듯이 1976년에 비하여 1994년의 受惠可能比率이 낮아진 것은 그 동안 일본이 취한 기계류와 각종 내구소비재 부문의 무역자유화에 따른 것

으로 풀이된다. 호주, 핀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의 경우 수혜가능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表 3〉 主要 GSP供與國의 GSP관련 輸入(1993년)

(단위 : 백만달러)

공여국	과세대상 수입 (A)	GSP대상 품목수입 (B)	GSP수혜 수입 (C)	수혜가능비율	이용비율	총유효비율
				(B/A, %)	(C/B, %)	(C/A, %)
호주(1991)	5,103	4,945	4,945	96.9 (46.6)	100.0 (100.0)	96.9 (46.6)
오스트리아	4,711	4,389	1,464	93.2 (88.9)	33.4 (12.6)	31.1 (11.2)
캐나다	7,809	4,810	2,962	61.4 (53.0)	61.6 (73.0)	37.9 (38.9)
E U	106,685	85,177	37,693	79.8 (60.7)	44.3 (35.9)	35.3 (21.8)
핀란드	1,276	609	289	47.7 (20.2)	47.5 (71.1)	22.7 (14.3)
일본(1994)	89,785	37,308	16,931	41.6 (52.9)	45.4 (53.1)	18.9 (28.1)
뉴질랜드(1992)	515	514	451	99.8 (93.3)	87.7 (100.0)	87.5 (93.3)
노르웨이	1,238	781	488	63.0 (46.6)	62.5 (50.5)	39.4 (23.6)
스웨덴	2,222	1,279	782	57.4 (20.1)	63.6 (76.6)	36.5 (15.4)
스위스(1994)	4,472	3,042	1,592	68.0 (44.8)	56.6 (40.5)	37.8 (18.1)
미국	95,183	37,715	19,559	39.6 (29.8)	51.0 (48.4)	20.0 (14.4)
OECD 합계	301,169	168,303	78,964	55.9 (45.8)	46.9 (43.7)	26.2 (20.0)

註 : ()내는 1976년 수치임.

資料 : UNCTA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Maintenance, Improve - ment and Utilization of the GSP, Rules of Origin and Technical Assistance*, Eighteenth Gener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SP, TD/B/SCP/12, August 1995.

GSP이용비율은 수혜국들이 GSP의 특혜를 얼마나 활용하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전체적으로 이용비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배경에는 쿼타실링, 엄격한 원산지규정 및 각종 행정적 장애와 품목배제 등이 수혜를 제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간에 따라 이용비율이 변한 것은 ① 국별·품목별 수혜가능 범위의 변화 ② 각국의 무역구조의 변화 ③ MFN 무역자유화에 따른 특혜마진의 축소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특혜마진이 작아질수록, 수혜대상국들이 특혜를 받기 위하여 관련 거래비용을 떠안을 만

한 가치가 낮아져 특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GSP공여국의 제도 내에 포함된 장애요인들이 이용비율을 낮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국별로 보면, 오스트리아, EU 등의 이용비율은 높아졌지만, 미국, 일본, 호주, 스위스 등의 경우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경우 비율이 낮아졌다.

총유효비율은 1993년의 경우 OECD평균이 26.2%였다. 이는 1976년의 20% 수준에서 소폭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선진국시장에 대한 수혜국의 수출품중 약 ¼수준만이 GSP혜택을 받고

<表 4> OECD 國家들의 年平均 輸入增加率

(단위 : %)

공여국	수혜국 전체				최빈개도국			
	총수입		GSP수혜 수입		총수입		GSP수혜 수입	
	1976~93	1992~93	1976~93	1992~93	1976~93	1992~93	1976~93	1992~93
호 주*	10.9	12.0	18.0	15.8	3.8	-4.7	4.8	21.1
오스트리아	9.0	-11.2	15.5	-18.5	6.7	-63.5	12.5	5.4
캐나다	6.8	0.6	12.3	-10.5	9.4	-16.3	18.7	-42.2
E U	4.2	7.9	14.3	5.5	10.5	-6.9	16.6	6.9
핀란드	4.4	-13.9	16.7	12.9	6.9	69.5	8.9	200.0
일본	13.8	4.4	12.8	12.3	8.8	-8.8	24.2	-43.0
뉴질랜드**	5.1	16.0	7.6	15.7	-4.9	-92.1	-3.7	-91.0
노르웨이	3.1	-5.3	19.9	2.3	19.9	-20.3	28.9	-25.0
스웨덴	1.8	2.1	10.4	5.8	2.0	13.9	23.5	-28.0
스위스	6.4	-6.7	10.7	5.5	0.8	-32.7	11.2	-12.9
미 국	8.9	14.2	11.3	18.1	7.6	5.9	-0.6	40.8
전 체	7.1	7.7	12.7	9.2	8.4	0.0	11.6	-8.4

註 : *는 1976~'91년과 1990~'91년 기준임.

**는 1976~'92년과 1991~'92년 기준임.

資料 : UNCTAD,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Maintenance, Improve - ment and Utilization of the GSP, Rules of Origin and Technical Assistance*, Eighteenth Gener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SP, TD/B/SCP/12, August 1995.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총유효비율은 높아지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日本의 경우 총유효비율이 상당히 낮아진 것이 일본의 보호수준 상승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MFN관세율의 대폭적인 인하추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GSP供與와 受惠의 國別 분포를 간략히 살펴보면, 표 5에서 보듯이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美國·日本·EU가 전체의 약 86.4%(1993년)를 차지하고 있다. 수혜국도 몇몇 개도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1992년의 경우 말레이시아, 태국 등 6개 개도국이 미국의 총GSP특혜의 79%를 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93회계년도 중 7개국이 71%를, 그리고 1992년 EU의 경우 12개국이 82%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주요 GSP수혜 개도국은 아시아의 중국,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중남미의 브라질, 멕시코 등으로 이 국가들이 총 GSP수혜의 80%이상을 점하고 있다.

〈表 5〉 主要國의 GSP受惠國으로부터의 輸入(1993년)

(단위 : 10억달러, %)

공여국	총수입 (1)	과세대상 수입 (2)	GSP대상 품목수입 (3)	GSP수혜 수입(4)	수혜가능 비율 (3)/(2)	이용비율 (4)/(3)	총유효 비율 (4)/(2)
E U	160.9	106.7	85.2	37.7	79.8	44.3	35.3
일 본	120.8	77.3	30.1	13.8	39.0	45.9	17.9
미 국	121.7	95.2	37.7	19.6	39.6	51.9	20.6
OECD합계	435.0	301.2	168.3	79.0	55.9	46.9	26.2
헝가리	3.6	3.6	3.3	3.3	90.7	100.0	90.7
합 계	438.6	304.8	171.6	82.2	56.3	47.9	27.0
EU·일본· 미국의 비중 (%)	92.0	91.6	89.2	86.4	-	-	-

資料 : UNCTAD, *Policy Review : Towards Revitalization of the GSP, Statistical Annex, TD/B/SCP/13/Add.1, September 1995.*

〈表 6〉 主要國 GSP의 受惠集中

	수입(백만달러)				비율(%)		
	총수입 (1)	과세가능 수입 (2)	GSP대상 품목수입 (3)	GSP 수혜수입 (4)	수혜가 능비율 (3)/(2)	이용 비율 (4)/(3)	총유효 비율 (4)/(2)
<미국 : 1992>							
주요 수혜국 ¹⁾	63,415	50,633	26,252	12,412	51.8	47.3	24.5
여타 수혜국	28,913	22,766	4,714	3,279	20.7	69.6	14.4
<EU : 1992>							
주요 수혜국 ²⁾	90,490	77,174	62,227	28,727	80.6	46.2	37.2
여타 수혜국	55,600	21,495	12,938	6,328	60.2	48.9	29.4
<일본 : 1993회계년도>							
주요 수혜국 ³⁾	69,918	41,270	23,533	9,992	57.0	42.5	24.2
여타 수혜국	55,176	37,182	6,917	4,029	18.6	58.3	10.8
<3개국 합계>							
주요 수혜국	223,823	169,077	112,012	51,131	66.2	45.6	30.2
여타 수혜국	139,689	81,444	24,570	13,636	30.2	55.5	16.7

註 : 1)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필리핀, 멕시코 등 6개국.

2) 중국,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홍콩, 필리핀,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등 12개국.

3) 중국,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7개국.

資料 : UNCTAD, *Policy Review : Towards Revitalization of the GSP*, Statistical Annex, TD/B/SCP/13/Add.1, September 1995.

3. GSP의 與件變化와 制度改善 努力

(1) 與件變化와 GSP의 性格 變化

그동안 GSP는 제도도입이 논의되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에 비하여 그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즉, 低開發國으로서 개도국들은 당초 선진국 위주의 상호주의적 원칙에 따른 양허협상 방식의 GATT 체제에서는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으므로,

바꾸어 말하면 그러한 무역체제에 참여할만한 경제적 실력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GATT체제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의 GSP는 개도국들의 무역이익 실현을 도와주는 제도로서 또 GATT 메커니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代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GSP가 도입된 후 20여년이 지나면서 선진국들의 대폭적인 關稅引下 혹은 貿易自由化가 추진됨으로써 특혜마진이 크게 축소되었으며, 한편으로 점차 공업화를 통하여 경제력을 향상시킨 개도국들은 GATT체제에 합류하는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며 또 GATT체제에 기여할 만한 경제능력을 갖추어 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이른바 선발개도국으로 불리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개도국들과 최근들어 급속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 세계무역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선진국들도 이들과의 무역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도국들도 그들의 무역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GATT(이제는 WTO)에 가입하고 다자간무역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GSP는 개도국들에게 있어 GATT의 대체수단이라기보다는 GATT의 다자간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입당시 GSP의 성격은 “一般化된”, “非差別的인” 그리고 “비상호주의적인” 제도로 규정되었지만, 그 후 선진국들이 GSP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자국의 국익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운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즉, 현실적으로는 GSP공여국의 목표와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일방적이고 非契約的인 조건으로 제도를 운용하였으므로 앞에서 본 당초의 취지와 원칙들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우선 GSP가 항상 일시적인 제도이며 개도국이 선진국 경제를 따라 잡는 것을 도와주는 메커니즘으로 이해되는 한, GSP가 일반화된 그리고 비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개념도 서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GSP가 일시적인 제도라면, 수혜대상 국가와 품목은 시간이 감에 따라 졸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GSP는 공여국이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정하는 제도이므로, GSP제도의 포괄범위가 일정하리라고 기대될 수도 없을 것이다. 포괄범위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GSP공여국들은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혜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GSP제도는 처음부터 국가와 품목배제로 GSP수혜를 제한하여 왔다. 국가배제의 개념에 따라서 미국은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와 OPEC 국가들에 대한 GSP수혜를 금지하여 왔다.³⁾ 품목배제에는 일부 농산물, 섬유, 의류, 시계, 일부 전자제품, 일부 철강제품, 신발류 및 일부 유리제품이 포함된다. 1991년의 경우 총관세부과 대상 수입품의 64%가 GSP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농산물 62%, 공산품 64%). EU의 경우 농산물의 GSP배제비율이 60%에 달하며 공산품도 39% 수준이다.

(2) 特惠마진의 縮小

이러한 여건과 성격의 변화는 GSP에 의한 대개도국 특혜마진의 축소로 더욱 뚜렷해졌다. GATT의 무역자유화 추진을 위한 수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라운드와 결과 최혜국대우(일반)관세율 수준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GATT의 제8차 무역협상이었던 UR협상을 거치면서 주요 선진국의 최혜국대우 관세율의 평균수준은 그 이전의 6.3%에서 3.9%로 낮아졌으며, 특히 주요 GSP공여국인 일본(전체 평균관세율 1.7%), 미국(3.5%), EU(3.6%)의 관세율은 섬유, 신발류 등 일부 고관세 품목을 제외할 경우 거의 무역장벽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이다.

3) 이 규정은 공산주의 몰락 이후 유고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동유럽국가와 구 소련에서 분리 독립된 국가에 대하여 GSP혜택을 주도록 완화되었음.

이에 더하여 UR에서는 철강, 건설장비, 농업기계, 의료기기, 의약품, 가구, 맥주, 증류주, 전자, 종이, 완구, 비철금속, 목재 등 13개 분야의 192개품목(HS 4단위 기준)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무세화(zero-for-zero scheme)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6개 화학제품에 대해서도 관세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큰 비율로 관세율을 낮추어 조속한 하향평준화(0~6.5%)를 이루기 위한 關稅調和 引下(harmonization cut)에 합의하여 선진국의 많은 공산품 관세가 무세 혹은 대단히 미미한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되어 있다. UR 합의사항이 완전히 이행되는 시점에서는 선진국들의 무관세품목 비중이 UR이전의 20% 수준에서 44%로 대폭 상승할 예정이다. 이는 종전에 비하여 GSP혜택이 주어질 대상품목 자체가 과거 80%에서 56%로 대폭 감소함을 의미한다.

UR의 관세인하로 인한 주요 GSP공여국들의 GSP마진의 축소를 평가한 UNCTAD 보고서에 의하면, GSP受惠開途國(최빈국 제외)에

〈表 7〉 主要 先進國의 UR 關稅讓許 內容

	양허관세율(%)		무관세 품목의 비중(%)	
	UR이전	WTO	UR이전	WTO
호 주	20.1	12.2	8	16
캐 나 다	9.0	4.8	21	39
E U	5.7	3.6	24	38
일 본	3.9	1.7	35	71
노 르 웨 이	23.8	11.9	20	43
뉴 질 란 드	3.6	2.0	55	65
스 웨 덴	4.6	3.1	22	34
스 위 스	2.2	1.5	26	35
미 국	5.4	3.5	10	40
선진국 평균	6.3	3.9	20	44

資料 : A. Hoda, "Trade Liberalization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Presented on the Informal Workshop, April 1994.

대한 미국, EU, 일본의 GSP마진은 2.6~2.9%포인트 (UR이전 GSP 마진의 38~46%)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U의 경우에는 특히 농산품(열대 및 비열대 농산품 모두)에 대한 GSP 마진이 크게 축소되며, 일본의 경우 熱帶農産品과 熱帶工産品의 마진축소가 뚜렷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비열대농산품과 열대공산품의 GSP마진이 크게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빈국에 대한 GSP마진은 UR을 통하여 EU의 경우 1.5%포인트(UR이전 GSP마진의 15%) 낮아지지만, 일본은 4.1%포인트 (UR이전 GSP마진의 61%), 미국은 2.7%포인트 (UR이전 GSP마진의 50%)씩 큰 폭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 부문별 GSP마진의 변화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UR협상 과정에서 多者間 貿易自由化의 부작용을 지적하였던 GSP 수혜개도국들이 MFN 자유화와 GSP의 특혜공여간의 잠재적 갈등 가능성을 강조한 것도 이런 취지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GSP마진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UR의 多者間貿易自由化 외에도 최근의 地域主義化 추세를 들 수 있다. 최근들어 다수의 地域貿易協定이 체결되어 회원국만이라도 우선 자유무역을 시험해야 한다는 추세 역시 역내국가간의 무관세 무역과 관세수준의 인하를 가져왔으므로 GSP제도에 의한 비호혜주의적 특혜제도의 존재이유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東西 冷戰體制下의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GSP의 출범과정에서, 서방 선진국들은 GSP를 공여함에 있어 개도국의 수출확대와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이 제도를 보지는 않았으며, 공산주의의 팽창억제 등 강력한 정치적·전략적 목적도 동시에 고려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냉전 체제 와해 후에는 非經濟的 考慮(non-economic considerations)가 그만큼 감소했으며 따라서 GSP에 대한 선진국의 관심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表 8〉 UR關稅引下에 따른 主要國의 部門別 GSP마진* 變化

공여국 부 문	수혜개도국(최빈국 제외)			최빈개도국		
	UR이전 GSP마진 (%)	UR이후 GSP마진 (%)	마진축소 (%포인트)	UR이전 GSP마진 (%)	UR이후 GSP마진 (%)	마진축소 (%포인트)
E U						
전품목	7.6	4.7	2.9	9.8	8.3	1.5
비열대농산품	3.7	0.0	3.7	10.5	7.3	3.2
열대농산품	4.6	0.0	4.6	5.0	0.0	5.0
열대공산품	5.0	2.3	2.7	4.1	3.7	0.4
천연자원제품	9.2	5.8	3.4	13.7	7.4	6.3
섬유·의류	11.1	9.3	1.8	9.8	9.1	0.7
가죽·신발	9.7	8.1	1.6	7.2	6.2	1.0
기타 공산품	7.0	3.9	3.1	8.8	6.3	2.5
일 본						
전품목	5.6	3.0	2.6	6.7	2.6	4.1
비열대농산품	8.8	5.3	3.5	7.5	1.5	6.0
열대농산품	19.4	8.6	10.8	6.0	3.7	2.3
열대공산품	7.6	4.3	3.3	9.5	5.4	4.1
천연자원제품	2.9	1.7	1.2	4.9	2.0	2.9
섬유·의류	6.9	5.4	1.5	9.3	6.5	2.8
가죽·신발	8.9	7.4	1.5	30.0	6.7	23.3
기타 공산품	4.7	2.2	2.5	4.0	2.6	1.4
미 국						
전품목	5.3	2.5	2.8	5.0	2.3	2.7
비열대농산품	5.6	2.4	3.2	3.2	1.5	1.7
열대농산품	5.8	4.0	1.8	11.0	8.7	2.3
열대공산품	4.9	1.9	3.0	4.3	0.5	3.8
천연자원제품	4.5	3.1	1.4	4.2	2.1	2.1
섬유·의류	6.2	3.5	2.7	3.6	0.0	3.6
가죽·신발	4.0	2.3	1.7	4.1	3.4	0.7
기타 공산품	5.4	2.5	2.9	5.6	3.6	2.0

註 : * 해당 수혜국의 GSP수혜수입액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한 수치임.
 資料 : UNCTAD 사무국(UNCTAD, TD/B/SCP/13/Add.1에서 재인용).

종합적으로 볼 때, 최근의 많은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GSP제도의 당초 구상에서 의도하였던 것에 비하여, 대상품목과 특혜 폭은 물론 수혜를 제한하는 각종 制度的·行政的 措置 때문에 실질적인 GSP특혜는 제한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수혜국가들의 범위도 훨씬 좁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 制度改善의 方向

위와 같은 GSP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은 기존 GSP제도의 단점을 분석한 후 GSP특혜의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제도개선 방향은 ① 수혜품목 범위의 확대 ② 특혜 마진의 확대 ③ 졸업제도의 근거와 기준의 객관화 ④ 원산지규정의 단순화와 명료화 ⑤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강화 ⑥ 서비스와 투자 등 신분야로의 GSP확대 적용검토 ⑦ 선발개도국의 GSP공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하에서는 UNCTAD의 특혜특별위원회 등에서 모색하고 있는 GSP제도의 개선노력을 부문별로 살펴보고자 한다.⁴⁾

① 受惠品目的 範圍 擴大

개도국의 GSP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최대의 과제는 수혜대상품목을 확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GSP가 개도국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공여국이 정한 GSP대상품목과 개도국이 수출능력을 가진 품목간의 不一致(mismatch)문제를 교정하여 개도국이 수출을 늘릴 수 있는 품목들을 GSP수혜대상으로 확대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UR타결과 관련하여 GSP수혜대상의 확대방향은 그동안 수량규제를 받아오다가 UR에서 대폭적으로 자유화된 농산물과 섬유·

4) UNCTAD, *Report of the Second Ad Hoc Expert Group on the GSP*, TD/B/SCP/15, June 1995.

의류부문이라 할 수 있다.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관세화된 품목들은 그 동안 각종 비관세조치 등으로 개도국의 GSP수혜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GSP공여확대가 중요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UNCTAD의 특혜특별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UR에서 관세화된 농산물 품목에 대한 미국, EU, 일본의 1992년중 GSP공여 실적을 보면, 수혜가능비율이 13.6%로서 전품목 평균(1993년) 55.9%에 비하여 매우 낮았으며, 총유효비율도 7.7%로서 전품목 평균의 26.2%에 크게 못미쳤다. 반면 GSP이용비율은 56.5%로서 전품목의 46.9%보다 오히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표 3과 표 9를 비교). 이는 이들 품목에 대한 개도국의 이용도는 상대적으로 높으나, 공여국이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개도국의 GSP수혜가 매우 낮았던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세화된 농산물 부문에서의 수혜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表 9〉 主要國의 UR關稅化 農産物의 輸入(1992年)

	수입액(백만달러)				비율(%)			
	세계(1)	수혜개도국 (최빈국 제외) (2)	GSP 수혜대상 (3)	GSP 수혜 (4)	(2)/(1)	(3)/(2)	(4)/(3)	(4)/(2)
미 국	4,943.3	552.7	271.6	222.1	11.2	49.1	81.8	40.2
E U	16,449.3	7,053.5	797.6	394.4	42.9	11.3	49.4	5.6
일 본	2,497.9	524.1	38.0	8.9	21.0	7.3	23.4	1.7
계	23,890.5	8,130.3	1,107.2	625.3	34.0	13.6	56.5	7.7

資料 : UNCTAD 사무국(UNCTAD, TD/B/SCP/13/Add.1에서 재인용).

UR이후 큰 폭의 수혜품목확대가 요구되는 또다른 중요부문은 섬유와 의류이다. 이 부문은 그 동안 MFA(다자간 섬유류협정)에 의한 엄격한 수입쿼타 적용 때문에 GSP수혜가 제한되어 왔으나, UR에서 MFA를 철폐하고 이들 품목의 교역을 GATT로 복귀시키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GSP대상품목으로의 확대가 요구된다.

향후 GSP대상품목의 확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품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UR이후 MFN 관세율이 5%이상이면서 현재 GSP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의 품목수와 수입규모(1992년 기준)를 UNCTAD사무국이 집계한 것이 표 10에 나타나 있다. 미국, EU, 일본 등 3대 GSP공여국의 해당품목의 수입은 일반수혜국으로부터 259.6억달러와 최빈개도국으로부터 10.1억달러 등 총 269.8억달러로서 GSP수혜국으로부터의 총수입 3,006.2억달러의 9.0%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EU와 일본의 경우에는 비열대농산물과 천연자원제품에서 GSP확대 가능성이 컸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섬유 및 의류와 가죽·신발류 및 기타 공산품에서 GSP 확대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GSP혜택을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품목의 확대와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GSP제도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낮추었던 GSP쿼터의 설정과 관세실링제 등 非關稅措置를 축소·폐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5년 새로이 개정된 EU의 GSP는 공산품에 대한 쿼터와 관세실링제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물론 제IV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각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특혜관세율을 서로 다르게 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EU의 새로운 GSP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② 特惠마진의 擴大

앞에서 본 바와 같이, MFN관세율의 인하에 따라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특혜관세율이 설정될 경우, GSP특혜의 마진은 크게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세인하에 따르는 특혜마진의 축소를 보상(보충)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GSP관세율을 무관세로 정하고, 특혜마진을 일반관세율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확대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表 10〉 主要國의 GSP擴大可能 品目*의 輸入 (1992年)

(단위 : 백만달러)

공여국 부 분	일반수혜국 (최빈국 제외)		최빈개도국		세계전체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E U						
비열대농산물	1,341.4	236	0.5	13	4,044.6	294
열대농산물	341.4	63	0.0	1	1,001.3	75
천연자원제품	1,710.6	146	25.1	20	7,709.9	179
섬유·의류	497.5	19	32.8	18	889.6	19
가죽·신발	1,259.3	16	0.6	5	2,096.4	16
기타 공산품	1,349.5	49	0.0	2	17,886.2	61
전 체	6,499.7	529	58.9	59	33,628.0	644
일 본						
비열대농산물	2,630.1	233	8.8	16	9,488.9	353
열대농산물	465.9	79	0.1	3	683.2	99
열대공산품	934.6	11	-	0	938.1	11
천연자원제품	736.0	65	1.5	6	2,321.0	76
섬유·의류	386.9	47	0.2	1	512.5	112
가죽·신발	603.3	19	0.0	1	794.5	21
기타 공산품	718.4	19	2.2	1	889.6	20
전 체	6,475.2	473	12.7	28	15,627.8	692
미 국						
비열대농산물	454.0	85	0.1	1	1,541.8	125
열대농산물	496.8	38	46.7	3	1,112.7	46
열대공산품	2.0	5	0.0	1	14.9	5
천연자원제품	311.9	17	0.1	1	430.0	28
섬유·의류	8,415.6	715	893.0	190	32,038.6	919
가죽·신발	2,259.9	73	0.4	4	8,673.9	80
기타 공산품	1,048.2	339	2.1	30	21,351.5	528
전 체	12,988.5	1,272	942.4	230	65,163.4	1,731
합 계	25,963.4	2,274	1,014.0	317	114,419.2	3,067

註 : * 는 UR이후의 MFN관세율이 5%이상인 非GSP대상품목 기준임.
 資料 : UNCTAD 사무국(UNCTAD, TD/B/SCP/13/Add.1에서 재인용).

③ GSP卒業의 根據와 基準의 客觀化

미국, 호주 등 일부 GSP공여국들은 1980년대 중반이후 GSP특혜가 일부 선발개도국에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을 명분으로, 국별 졸업 혹은 국별·품목별 졸업을 통하여 GSP수혜를 완전히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GSP졸업제도와 관련하여, UNCTAD는 졸업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첫째, GSP졸업의 기준은 기본적으로 GSP제도의 근본목적에 부합되는 객관적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둘째, 국별졸업에 적용하는 개도국 발전의 기준은 경제적 측면 외에도 사회적 측면이 함께 고려해야 하고, 셋째, 국별·품목별 졸업의 기준은 엄격한 경쟁력 검증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넷째, GSP공여국이 새로운 졸업기준을 제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다자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UNCTAD는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GSP졸업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수혜개도국에게 졸업과 관련하여 상호주의적 조치를 요구하는 조건부 운용을 해서는 안되며, 일시에 졸업시키기보다는 수혜개도국이 이에 적응하도록 충분한 정도의 과도기간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④ 最貧開途國에 대한 受惠擴大

GSP수혜가 일부 앞선 개도국에게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UNCTAD의 GSP 전문가그룹은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 수혜대상을 全品目으로 확대(full product coverage) ㉡ 完全 無關稅化(full duty free GSP rates) ㉢ 세이프가드와 졸업조치로부터의 면제 등을 공여국들에게 건의하고 있다.

⑤ 新分野로의 GSP概念 擴大

UR에서 서비스교역과 무역관련투자에 관한 규범제정 등을 계기로 하여, UNCTAD내에서도 서비스와 투자 등에 관해서 GSP개념을

도입하여 개도국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GSP에 상당하는 조치가 서비스부문에 취해질 때의 효과로 인하여 개도국이 수출할 수 있는 서비스부문의 수요가 증가될 만한 구체적인 서비스부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즉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가지는 서비스분야를 찾아내고), 이 부문 서비스의 수입을 규제하는 선진국의 정책을 확인한 후, 개도국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의 선진국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즉 규제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인데, 이들은 많은 연구와 협의가 요구되는 어려운 과제로 평가된다.

⑥ 原產地規定의 統一

그 동안 GSP공여와 관련된 원산지규정이 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복잡하여 개도국들의 GSP수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므로, GSP원산지규정의 개선과 통일화를 위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UR협정에서 통일원산지 규정의 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⁵⁾, UNCTAD내에서도 GSP에 적용될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에 관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통일된 GSP원산지규정을 만들 때에는 世界關稅機構(WCO, 중전의 관세협력이사회 CCC) 기술위원회의 작업결과⁶⁾도 함께 고려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GSP관련자(공여국의 세관당국과 수혜서류의 확인당국) 모두에게 편리하다는 점에서는 WCO의 통일원산지규정이 비특혜무역 뿐만 아니라 GSP 등 특혜무역에도 적용되는 것이 바람

5) UR 原產地規定協定文(Agreement on Rules of Origin)은 非特惠原產地規定만을 그 대상으로 함. 즉 GATT(1994)의 최혜국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조치에 적용되는 경우(特惠原產地規定)를 제외한 여타 경우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법률, 규정 그리고 행정적 결정 등을 목적으로 함.

6) UR협정의 원산지규정협정문에서는 기술위원회를 구성하여 UR협정의 발효후 3년 이내에 통일원산지규정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직하기는 하나, GSP원산지규정의 통일화는 비특혜 원산지규정의 통일화와는 다른 목적을 가지므로 UNCTAD 사무국은 GSP원산지규정을 GSP의 본래취지에 맞추어 독자적으로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GSP원산지규정 통일화의 큰 방향 중의 하나는, UR이후의 특혜마진 축소에 대응하여, GSP의 경제적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한 GSP원산지규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원산지규정의 단순화에는 GSP C/O Form A⁷⁾와 직접운송조건 등 행정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단순화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수혜국의 書類確認當局(certifying authorities)과 공여국의 稅關當局(customs authorities)간의 상호신뢰에 기초한 행정협력의 강화도 고려될 수 있다.

⑦ 先發開途國의 GSP 導入

개도국 중에서 그 동안 성공적인 공업화를 통하여 경제발전에 성공한 선발개도국들이 GSP導入을 통하여 후발개도국 지원을 분담하는 방안도 일부 선진국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에 대한 GSP도입 요구는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4. GSP效果의 研究 事例

(1) 몇가지 概念

GSP와 같은 무역특혜제도의 효과는 일차적으로 지역경제통합론의 분석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 GSP와 지역통합협정은 일부 해당국가

7) 해당 상품이 GSP혜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의 하나로서, 수출입자가 기재·서명하고 세관당국이나 기타 정부당국이 확인한 GSP원산지증명서 양식 A(GSP Certificate of Origin Form A)를 의미함.

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貿易創出과 貿易轉換에 관한 바이너(Jacob Viner)의 개념으로 GSP의 무역효과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바이너는 특혜적 방법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할 경우 나타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비교정태적인 부분 균형모형을 제시하였다. GSP의 경우 貿易創出은 관세특혜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특혜공여국의 비효율적인 생산을 줄이고 외국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촉진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율성 증대를 의미한다. 貿易轉換은 특혜공여국이 특혜를 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던 것을 GSP도입 후에는 특혜수혜국에서 수입하게 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과거에는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비수혜국의 공급자로부터 수입하던 것이 GSP의 관세특혜 때문에 이제 덜 효율적(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이지만 GSP 특혜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공급자로부터 수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특혜수혜국은 자국상품의 수출증대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특혜공여국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며 종전에 수출하던 제3국(특혜를 받지 않는 국가)은 수출감소를 통하여 손실을 입게 된다. 이러한 개념에 의하면, GSP의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의 무역창출이 클수록, 그리고 부정적인 무역전환 효과가 작을수록 GSP의 전체적인 긍정효과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GSP공여에 따른 무역전환 효과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GSP수혜국과 비수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간의 대체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반대로 GSP수혜국 제품과 공여국 국내제품간의 대체성이 높을수록 무역창출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무역전환의 가능성은 낮아진다.

GSP수혜국의 수출증대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 GSP혜택 때문에 한 수혜국이 비교우위를 가지게 되는 산업이나 품목을 상정해 보자. 만약 GSP혜택이 없었다면(비교우위체제의 인위적인 왜곡이 없었다면), 다른 산업에 갔을 투자가

GSP때문에 그 산업이나 품목으로 오게 되므로 그것은 최적이지 아니며(suboptimal) 따라서 모든 품목의 완전 무역자유화가 없이 기존의 왜곡체제하에서 GSP에 의한 일부품목의 관세인하는 차선택이론(The Second Best Theorem)이 설명하는 바와 같이 경제전체적으로 효율성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GSP특혜의 공여가 수혜개도국의 산업의 다양화를 유도한다는 당초 GSP의 목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수혜국의 산업을 GSP혜택을 받는 일부 수출산업으로 특화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GSP특혜가 없었다면 축출되어 없어졌을 비효율적인 부분의 생산을 유지시키거나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무역자유화 이후에 단계적으로 파급될 동태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차별적이던 비차별적이던 간에 무역자유화 조치는 시간이 감에 따라 해당국의 성장과 발전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GSP특혜는 수혜국에게 새로운 시장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자원은 비교우위가 있는 수출산업에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과정에서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투자재원이 들어올 경우, 과거에는 생산할 수 없던 생산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생산기술과 추가적인 우위요소들이 동반하여 유입될 것이며, 결국 수혜개도국의 생산능력 제고와 생산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개도국의 협소한 국내시장 문제를 완화하여 생산성 향상을 더욱 촉진하게 된다.

(2) GSP效果에 관한 研究結果

① 效果推定の 複雜性

GSP도입의 공여국과 수혜국의 편익과 비용의 가능성을 이론모형에서 언급하는 문제와는 달리, 이러한 편익과 비용의 크기를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일은 막대한 정보와 복잡한 계산과정을 요구한다. 무

역전환과 무역창출 효과를 아주 간단한 부분균형모형에서 추정하더라도 해당품목의 국내산품, 수혜국산 수입품, 비수혜국산 수입품 등의 수요탄력성, 공급탄력성, 국내외 제품간 대체탄력성, GSP수혜국과 비수혜국 제품간의 대체탄력성 등 추정이 매우 어려운 탄력성 값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는 매우 불확실한 가정에 의존하거나 기껏해야 이들 탄력성 값의 상대적인 크기 혹은 순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동태적인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된다. 일례로 GSP특혜의 동태적인 효과추정을 위해서는 투자증대 효과가 필수적으로 먼저 요구되는데, 투자결정에 미치는 GSP외의 여타 요인들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GSP특혜와 투자확대간의 관계 추정의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GSP특혜의 實質的 受惠者가 누구인지 즉 수출업자인지 수입업자인지를 구분하여 그들의 실제 이익을 추정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진다. 실질 수혜자의 문제는 특혜의 稀少性 地代(scarcity rent)가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따르며, 그것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공급독점력과 수요독점력의 정도, 그리고 GSP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수출업자가 지대를 거의 차지하지 못한다면, 수혜국의 실질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오히려 GSP공여국의 수입업자에게로 이익이 대부분 돌아갈 수도 있다. 또 현실적으로는 GSP제도에서 제외된 품목과 수혜제한 조항, 수입에서 실질 GSP수혜율이 낮다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만 효과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다.

② GSP도입의 貿易效果

GSP의 무역효과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美 國際貿易委員會(USITC, 1983)가 미국GSP의 공여대상 650개 품목군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GSP가 미국의 수입증대에 미친 영향 특히 무역창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GSP공여가 미국의 수입증대를 가져왔다는

주목할 만한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12개 품목에 불과하였다. 무역창출의 증거는 미약하였지만, 특혜수혜국 제품의 수입이 비수혜국 제품 수입을 대체하는 무역전환이 발생했다는 경우는 상당수 지적될 수 있었다.

Sapir와 Lindberg(1984)는 미국의 GSP특혜가 무역과 시장점유율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15개 부문의 무역통계에 대하여 품목간·국가간 횡단면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들은 USITC(1983)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다 더 큰 무역창출 효과를 발견하였으며, 수혜개도국의 사전적 제품생산 능력이 GSP특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큰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또한 특혜마진의 크기가 GSP활용의 중요한 설명변수가 됨을 보였다. 수혜국의 사전적인 공급(생산)력이 GSP혜택의 전제였다는 연구결과는 실제 공업화에 성공한 신흥개도국들이 GSP혜택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당연히 예상된 것이기도 하였다.

Baldwin과 Murray(1977)는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여 무역전환과 무역창출 효과를 모의실험(simulation)한 결과, GSP는 상당한 무역창출을 가져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관련 연구들을 종합한 Langhammer와 Sapir(1987)는 GSP특혜 때문에 약간의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현실적으로도 GSP공여국들이 개도국산 제품의 과세수입액의 $\frac{1}{4}$ 정도만이 GSP특혜 수입이었으며, 선진국들의 GSP제도 운영과정에서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보면, GSP의 효과는 품목별 수혜제한과 다양한 종류의 조건부 수혜 때문에 크게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8) OECD(1995), PP. 6~7.

③ UR 多者間貿易自由化의 效果

기존의 GSP특혜 등을 향유하고 있던 개도국들은 UR협상과정에서 다자간 무역자유화 조치가 개도국의 특혜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UR때문에 생기는 특혜잠식에 대한 UNC - TAD(1994)의 추정에 따르면, UR의 MFN 관세인하는 GSP 관세마진을 미국의 경우 9%, 일본 15%, EU 23%씩 각각 낮추며, UR의 무세화 계획의 도입으로 GSP 수혜가능 범위는 약 1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GSP공여국들이 개도국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품목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자간 무역자유화가 개도국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개도국에게 불리하다고 판정할 수는 없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즉 UR이 개도국의 GSP수혜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경험분석이 요구되지만, 특혜잠식의 추정 그 자체보다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포괄적인 효과분석이 필요하다. Francois, McDonald 과 Nordström(1994)의 경험분석에 의하면, 많은 경우에 특혜잠식보다는 무역자유화의 전반적인 편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Harmsen 과 Subramanian(1995)은 ① GSP특혜의 이익은 몇몇 선진개도국에게 편중되고 있으며 ② 수혜개도국산 상품의 과세품목 수출중 25% 정도만이 GSP혜택이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GSP마진축소와 GSP 수혜품목의 축소가 개도국에게 그리 큰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점들을 감안한다면, MFN 관세율의 인하에 따른 무역증대효과가 GSP특혜폭의 감소에 따른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Ⅲ. 韓國經濟와 GSP導入與件

1. 韓國의 GSP受惠와 卒業

수출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해 온 한국의 경우, GSP는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한국경제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와는 달리 1970년대 들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은 큰 어려움에 당면하였으나, 1971년 이후 선진국들이 도입한 GSP制度는, 선진국들의 공산품 관세율이 당시만 해도 평균 10% 이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한국수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국정부와 大韓貿易振興公社(KOTRA)는 선진국의 GSP 운용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정보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수출업계가 동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支援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의 수출품 중 GSP공여국의 GSP대상품목 수출의 비중이 여타 개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우리의 GSP수혜가 활발하였던 1986년의 UNCTAD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GSP공여국 수출에서 GSP배제품목 수출이 점하는 비중이 20.7%에 그쳐 주요 개도국 중에서는 홍콩(11.0%) 다음으로 가장 낮았으며, 개도국 전체 평균 34.8%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이는 우리의 수출구조가 선진국의 GSP혜택을 받기에 유리한 쪽으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며 또 GSP혜택을 적극 활용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 참조).

주요 선진국시장에서 우리나라의 GSP수혜정도를 보면, 미국시장에서 韓國은 대만에 이어 第2의 受惠國이었으며, EC에서는 유고, 말레이시아, 홍콩, 인도에 이어 제5위 수혜대상국이었다. 1990년까지 일본시장에서는 한국이 제1위의 수혜국이었다.

〈表 11〉先進國 GSP輸入의 受惠國別 狀況(1986년)

(단위 : 백만 달러)

GSP 수혜국	총과세가능 품목의 수입 (1)	GSP혜택이 배제된 품목 의 수입(2)	배제비율 (3)=(2)/(1), %	제조품과 반가공품의 품목수	제조품과 반가공품의 비중, %
멕시코	12,122	4,926	40.6	300	34.7
한국	10,027	2,078	20.7	668	85.1
브라질	9,131	3,350	36.7	448	42.0
홍콩	6,807	747	11.0	818	93.6
중국	6,331	1,914	30.2	638	48.2
태국	4,209	2,441	58.0	310	43.5
대만	3,933	1,571	39.9	950	90.2
말레이시아	3,399	1,790	52.6	218	38.3
인도	3,256	1,243	38.2	429	37.8
전체 수혜국	89,978	31,282	34.8	-	-

資料 : UNCTAD magnetic tapes(대한무역진흥공사(199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의 GSP수혜는 1970년대에 이어 1980년대 들어서도 빠른 증가세를 보여 1987년에는 GSP수혜수출이 70.1억달러에 달하였으며,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GSP수혜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4.8%까지 상승하였다. GSP수혜수출은 특히 미국, 일본, EU에 집중되었는데, 1987년에는 이 3개국에 대한 GSP수출이 63억달러에 달하여 우리나라 전체 GSP수혜 수출의 90%를 점하였다(표 12 참조).

그 후 우리나라는 1988년 EC의 對韓 GSP공여정지, 1989년 미국의 對韓 GSP졸업 그리고 일본 등의 GSP에서 품목별 수혜한도에 달한 우리나라 제품의 증가추세로 GSP수혜실적이 감소하거나 부진하였으며, 총수출에 대한 GSP수혜수출의 비중도 1990년과 1991년에는 1980년대 중반의 절반수준인 7%대로 하락하였다. 다만 한·EC 간의 知的財産權 保護에 관한 합의도출 등으로 1992년부터 EC의 對韓 GSP공여가 재개되면서 1992년에는 다시 GSP수혜수출이 증가하였다(표 12참조).

〈表 12〉 우리나라의 GSP 受惠實績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85	'86	'87	'88	'89	'90	'91	'92
수혜총액(A)	4,151	5,471	7,005	6,967	5,848	4,967	5,259	6,171
미 국	1,655	2,220	2,504	2,766	-	졸업	-	-
일 본	1,183	1,682	2,562	3,486	3,569	2,624	2,766	2,770
E U	678	931	1,229	←	정지	→		2,013
카나다] 635] 638] 710] 715	952	908	950	682
EFTA					577	614	663	580
호 주					750	677	746	졸업
뉴질랜드						144	134	126
총수출(B)	30,283	34,741	47,281	60,966	62,377	65,016	71,870	76,632
A/B(%)	13.7	14.3	14.8	11.4	9.4	7.6	7.3	8.1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주요국 시장에서 우리상품은 품목별 GSP수혜한도에 달하거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品目別 卒業 혹은 品目別 受惠停止가 빈발하고 있으며, 1992년부터 호주는 우리나라를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졸업시켰으며, 1995년 개정된 EU GSP에 의한 국별·부문별 졸업에 우리나라는 많은 부문에서 졸업대상으로 지목되어 있어 향후 GSP수혜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對韓 GSP졸업(1989년 1월부터 한국을 GSP수혜에서 완전히 졸업)과 EC의 對韓 GSP 공여중지(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차별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1988년 1월부터 GSP중지)가 한국수출에 미친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는 쉽지 않으나, 한국이 미국과 EC로부터 GSP혜택을 받았던 기간중 연평균 19.6%와 31.2%의 높은 신장율을 보이던 이 시장에 대한 韓國商品輸出이 1989년을 고비로 1989년과 그 이후 수년간 감소하거나 적어도 신장율이 크게 하락하였다. 물론 1989년 이후 한국내의 극심한 勞使紛糾와 賃金上昇, 원貨價値의 上昇 등이 한국의 수출부진의 주요인이라 할 수 있으나, 미국과 EC시장에서 GSP혜택이 중지되었던 점도 한국상품의 價格競

爭力을 낮추는 하나의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예로서 대한무역진흥공사가 UN의 아시아太平洋經濟社會理事會(ESCAP)의 용역으로 수행한 연구결과 (『한국의 미국 및 EC GSP 졸업영향분석』, 1990. 11)에 따르면,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미국과 EC의 GSP혜택에서 졸업한 한국산 제품들은 졸업이후 대체로 미국과 EC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단위가격이 여타국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부품목의 경우(대기업제품을 중심으로) 한국기업들은 일본시장 등 여타 시장으로 수출시장 전환을 모색한 것으로 동 보고서가 분석하였다.

2. 韓國의 OECD加入과 開途國 地位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의 회원국들에게는 각종 자유화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후진국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OECD회원국들은 개도국에 공공원조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개도국들의 모임인 77그룹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에 부여하고 있는 우대를 받아왔던 우리나라가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 특히 개도국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본 절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開途國의 概念과 韓國經濟

개도국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척도로는 일인당 GNP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분류에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사회적 요소들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GATT 및 WTO에서는 開發國의 地位를 해당국가 스스로가 정하는 (self-elect or self-declare) 것으로 되어 있다. GATT 및 WTO에 最貧國(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開發國(developing countries)에 대한 정의는 없으므로, WTO 차원에서 開發國地位는 법적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라 할 수 있다.

世界銀行(World Bank, 1996)은 1994년 1인당 GNP를 기준으로 전세계 국가들을 저소득국(725달러 이하), 중하소득국(725~2,895달러), 중상소득국(2,895~8,956달러) 및 고소득국(8,956달러 이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소득국에는 OECD국가 외에도 쿠웨이트, 브루나이 등 산유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및 이스라엘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들 국가를 모두 선진국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한국은 1994년 1인당 GNP 8,438달러로 중상소득국으로 분류된다.

OECD를 先進國 모임으로 간주하여 OECD 가입을 선진국으로의 진입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있으나, OECD 가입으로 반드시 개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터키는 OECD 설립 초기부터 회원국이었으나 여전히 개도국이며, 멕시코도 1994년 OECD 가입 당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한 국가가 OECD와 77그룹에 동시에 회원국일 수는 없으므로, 멕시코도 OECD 가입시 77그룹을 탈퇴하였다.

OECD내의 開發援助委員會(DAC)의 개도국 명단은 개발원조대상국의 명단인데, 1996년부터 싱가포르, 브루나이, 쿠웨이트, 카나르, UAE, 바하마 등이 제외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1996년까지 DAC 개도국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① 세계은행의 고소득국 그룹으로의 분류 ② 경제·교역규모의 세계 10위권 진입 ③ 1996년 OECD 가입 등을 고려할 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GSP의 경우 美國과 濠洲가 우리나라를

이미 졸업시켰으며, EU도 1996년부터 우리나라를 품목별 졸업대상에 포함했으며 1998년부터 도입될 국별 졸업제도에서도 한국을 포함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겠다. 또한 미국의 UR이행법안은 보조금 협정과 관련하여 USTR이 개도국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법안 제안서에서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를 개도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EU도 유사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EU로부터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2) 開途國地位 變化時의 影響

WTO 協定에는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이 많이 있으며,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자격으로 관세인하,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감축과 관련하여 履行期間 및 減縮比率에 대한 우대를 받고 있으며,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기간 및 최소수입량 허용치(MMA : 최소시장접근 물량)에서 우대조치를 얻었다. 우리 농업의 취약성과 농산물 문제의 정치적 예민성을 고려할 때, 농산물에 관한 한 개도국지위의 상실은 받아 드리기 어려운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⁹⁾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도 WTO 상계조치협정에는 개도국에 대해서는 금지보조금 철폐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우대조건이 있어 개도국지위가 상실될 경우 해당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보조금 수혜산업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 반면 보조금의 조기철폐는 통상마찰의 감소와 국내 산업구조조정의 촉진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농업이외에 크게 부담이 될 부문은 환경부문이며, 특히 기후변화 협약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부속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

9) 장의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문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6-04, 1996. 7을 참조.

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삭감해야 하는 국가들을 나열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는 이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1998년 제4차 회의에서 이 국가 리스트를 재검토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가 개도국지위를 상실할 경우 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3) 對應 方向

앞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유지는 점차 어려워지겠지만, 개도국 지위 상실은 농업과 환경부문 등에서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선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선별적인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은 서로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대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 ① 현재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외적으로 개도국지위의 변화에 대한 일체 언급을 삼가한다.
- ② 어느 시점에서 한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산물 및 환경관련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개도국지위 포기를 선언한다.
- ③ 전 분야에서 개도국지위 포기 시점을 예시한다(예를 들어 향후 10년내).

3. 韓國의 GSP導入의 意味와 導入與件

21세기 先進·國際·世界中心國家를 지향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경제사회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우리 경제의 장기적 발전과 이익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OECD에의 가입과 함께, 대개도국 공공원조의 확대와 GSP 공여는 이를 향한 기본과제라 할 수 있다.

향후 각종 국제회의에서도 한국의 GSP도입 요구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해 나가고, 개도국과의 적극적인 관세협력을 통한 무역증진을 도모하여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는 적절한 시기에 GSP를 도입, 운용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GSP供與의 意味와 影響

우리나라가 개도국들에게 GSP특혜를 공여하게 될 때 가지게 될 몇 가지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외적으로 우리경제의 국제적 위상제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지난 40여년간 개도국으로서 선진국의 GSP혜택을 받아 오던 국가가 압축성장과정을 거쳐 여타 개도국에게 GSP혜택을 공여하게 되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 물론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2년 먼저 OECD에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제수준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당분간 멕시코가 GSP공여를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등 일부 동유럽국가들의 GSP제도는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외교적 요소가 크게 고려된 소규모 경제의 GSP제도로서 우리나라와는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GSP공여국으로 등장할 경우, 선진국들로부터 받고 있는 우리의 GSP특혜가 빠른 속도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GSP의 공여와 수혜는 별개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헝가리, 불가리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과 같이 GSP를 공여하면서도 GSP특혜를 수혜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美國, 濠洲, EU 등에서 이미 GSP수혜를 졸업하였거나 품목별 졸업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가 GSP공여국으로 등장하면 GSP공여국들은 對韓 GSP공여를 제한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의 대개도국 經濟協力 및 産業協力이 한 차원 높아지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동안 해외직접투자와 공공개발지원(ODA)의 점진적인 확대가 대개도국 협력의 주요 채널이었으나, GSP공여에 따른 대개도국 경제협력의 강화는 수혜개도국에 대한 우리기업의 직접투자와 이를 통한 산업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GSP수혜개도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특혜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GSP특혜를 위한 원산지 규정에서는 GSP공여국들이 자국산 원재료와 부품 사용분을 수혜국 원산품으로 인정해 주는 이른바 供與國産 原資材 使用分 原産地 認定制度(donor country content rule)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투자지를 선점함에 있어서 GSP수혜가 가능한 개도국들을 적극 감안할 것이며, 해당 개도국들도 외국인투자유치 시 이러한 점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위와 같은 해외투자의 증가는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산업의 공동화 우려를 한층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GSP에 따른 해외투자의 증대는 주로 저소득 개도국에서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업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국가들이 수혜국으로 포함될 경우 중급기술의 공정의 해외이전도 상당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GSP의 공여는 일반적으로 수입증대와 수입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수혜국 상품의 수입이 관세특혜만큼 국내 시장에서 유리해지므로, 종전에는 국내산품으로 소비되던 것이 수입품으로 충당되는 이른바 貿易創出效果와, 輸入構造面에서도 수혜국산 제품과 비수혜국산 제품간의 가격경쟁력의 변화로 무역전환이 발생한다.¹⁰⁾ 무역전환의 방향은 우리나라 수입구조에서 선진국의 비중저하와 수혜개도국의 비중상승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수입의 낮은 가격탄력성 등 경직적인 구조를 감안할 때, 貿易轉

10)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개념과 의미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손병해, 경제통합론(1992)을 참조.

換效果가 그리 크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여섯째, GSP특혜가 주어지는 개별품목 특히 중저급 기술의 개도국 비교우위 품목의 경우 GSP에 의한 輸入增大效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뚜렷할 것이며 따라서 국제수지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상당하리라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GSP 공여가 貿易收支를 악화시키는데 대해서는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GSP공여에 따른 해외제품의 가격하락과 국내경쟁 촉진 등의 효과로 국내의 산업경쟁력 제고 효과와 이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GSP공여는 개도국 상품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수입품의 관세를 낮추어 결국 국내시장의 가격하락을 통하여 생산자잉여와 정부의 관세수입을 줄이고 소비자잉여를 늘리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초래한다. 이는 우리의 경제정책이 생산자 위주에서 점차 소비자후생도 함께 중시하는 기조로 변화되고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는 추세와도 부합된다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GSP공여는 우리나라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기조라 할 수 있는 무역자유화와 경쟁촉진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안정, 생산자의 이익과 함께 소비자의 후생 나아가 국민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정책, 대개도국 경제협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증대 등에 부합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입증대에 따른 국내산업의 부담과 국제수지 악화 등이 국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2) 國際的 與件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전제로 국제경제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선진국의 GSP 공여는 그 동안 많은 개도국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여 선진국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우리경제는 1996년 OECD에 가입함으로써 일단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자격과 여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OECD회원국 중에도 아이슬란드, 터키 및 멕시코 등 3개국은 1996년 현재 GSP를 공여하지 않고 있다. 이들 중 아이슬란드는 인구 260만명 GDP 60억 달러로 OECD회원국 중 최소규모이며(그 다음으로 작은 룩셈부르크는 인구 400만명 GDP 106억달러), 지리적으로도 유럽대륙과 북미대륙에서 상당히 고립된 위치에 있다. 터키는 인구와 GDP에서 다소 큰 국가이지만, 일인당 GDP가 2,000달러를 약간 상회하여 OECD국가평균의 1/10에 불과하며 많은 개도국들보다 오히려 낮은 실정이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계속하고 있다. 1994년 OECD에 가입한 멕시코의 경제도 전체규모는 OECD의 중간정도에 해당하지만, 일인당 GDP가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4,000달러 수준이고 무역수지와 경상수지가 적자를 계속하면서 1995년에는 심각한 외환금융위기 등 국내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GSP 공여문제를 검토하면서 OECD 회원국이라 하여 반드시 GSP공여의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는 논거로서 이들 3국이 GSP를 공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많은 측면에서 예외적인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경제규모면에서도 1995년 한국의 GDP와 1인당 GDP는 각각 4,656억 달러와 10,400달러로서 OECD 회원국의 각각 9위와 24위에 해당하는 수준을 나타내었다. 1995년중 輸出과 輸入은 1,250억달러와 1,400억달러를 넘어서 세계전체 수출과 수입의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세계 12대 무역대국으로 등장하였다.

한편 1995년 10월 개최된 UNCTAD 제22차 特惠特別委員會에서는 GSP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며, 미국 등 일부 GSP 공여국들은 先進開途國(NICs)의 GSP 도입을 통한 개도국 지원

분담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일부개도국들도 GSTP¹¹⁾ 第2라운드 協商¹²⁾ 및 방콕협정¹³⁾ 제3라운드 협상¹⁴⁾ 등에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양허폭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3) 國內經濟的 與件

아직도 GSP수혜국의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대개도국 GSP供與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대개도국 關稅特惠의 提供은 우리나라의 관세수입 감소와 수입증대라는 비용적 측면의 국내경제적 효과를 초래하지만, 동시에 대개도국 경제지원 확대 등을 통한 국제경제적 위상제고와 대개도국 해외투자촉진 등을 통한 산업협력

-
- 11) GSTP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는 남남협력의 일환으로서 비동맹 77그룹가맹국인 개도국간의 상호 관세인하 등 무역장벽 완화와 철폐를 통한 무역·생산 및 고용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UNCTAD 주관 하에 이루어진 무역협정임. 1979년 2월 G-77 각료회의에서 GSTP 설치가 결정된 뒤, 1988년 4월 GSTP 각료회의에서 제1라운드가 종결되어 48개국이 협정에 서명하여 1989년 4월에 발효됨. 48개 참가국의 총 관세양허품목은 1,500개이며, 48개 협정서명국중 1996년 현재 40개국이 비준을 완료하였음. 우리나라의 관세양허품목은 26개이며 양허폭은 10%임. 우리나라 GSTP 양허대상품목의 총 수입 중에서 특혜대상 수입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12) 1991년 11월 G-77 각료회의에서 1992년 7월 제2라운드 협상을 개시하여 1994년 7월까지 협상을 종료하도록 공식 선언함. 제2라운드 협상위원회 1차 회의가 1992년 7월 개최되어 4개의 부문별 협상 그룹을 구성하여 협상을 진행함. 관세양허를 위한 양자협상은 그룹 2에서 논의하며, 1994년 6월 이후 양자협 및 협상을 개최하여 왔음.
 - 13) 방콕협정은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개도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제1차 협정을 의미하며, 1976년 6월 발효되어 현재 회원국은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한국 및 파푸아뉴기니 등 6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현재 249개 품목(HS 6단위 기준)에 대하여 양허하고 있으며, 양허폭은 30%로 하고 있음. 방콕협정과 GSTP에 의하면, 기본관세율과 양허관세율간 관세양허폭을 일정비율로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품목의 기본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협정회원국에게 적용할 양허세율도 인하 조정하여야 함.
 - 14) 1996년에 방콕협정의 제3라운드 협상이 출범함. 1995년 12월중 방콕협정 전문가회의에서 협상분야와 진행방식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관세인하 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의 철폐·완화, 투자 및 서비스 교역, 공동원산지 규정 제정 등 폭넓은 의제들이 다루어질 것임.

의 강화 등의 긍정적인 대외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한국의 GSP공여는 점차 기존 GSP受惠를 縮小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요약하면, GSP도입은 일부 해당품목에서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費用的 側面(수입증대·국내생산 감소, 관세수입감소, GSP수혜의 축소 가속화, 무역수지악화 등)이 크게 부각될 수 있으나, 거시적·전략적·장기적으로는 肯定的 側面(대개도국 경제협력과 산업협력 증진, 국제경제적 위상제고, 경쟁촉진으로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후생증대) 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GSP도입을 위한 최적시기의 선택은 우리경제의 제반 여건 즉, 국내산업의 경쟁력 수준, 국내물가의 안정, 국제수지와 통화가치 등 국내 거시경제의 안정성, 1인당 GNP 등 경제발전수준, 경제정책의 기초, 해외직접투자·해외 산업협력 등 경제의 국제화, 국제경제사회의 조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GSP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단계에 와 있음을 보여주는 여건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기업들은 활발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국내적으로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면서 생산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의 후생 즉, 국민생활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경제운용을 모색하고 있다. 또, 정부는 대외적으로도 한국경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극 합류하여야 한다는 경제의 국제화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 GSP공여를 적극 검토해야 할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1996년 關稅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GSP를 공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도입시기와 대상국가수, 대상품목 및 특혜의 폭, 산업피해구제 대책, 국별 및 품목별 졸업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경우, 동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여건은 GSP제도의 즉각적이고도 전반적인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최근 수년간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몇 년간의 흑자기간을 지난 후 1990년대 들어 한국은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1996년 200억달러를 상회하는(GNP 대비 5~6%) 무역수지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1980년대 초반의 무역적자·외채급증 시기에 경험한 바와 같이 우리상품의 경쟁력과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GSP 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개방과 대외협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1996년 이후 뚜렷해지고 있는 경기후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위주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과, 대기업위주의 기술·자본집약적인 산업간의 景氣의 兩極化 問題이다. GSP도입에 따라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업종은 대부분 중소기업위주의 노동집약적이고 가격경쟁력에 의존하였던 업종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양극화가 뚜렷한 시기에 GSP制度를 도입하는데 대한 정책당국의 어려움과 중소기업 등 업계의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양 부문간 격차가 확대되었던 것은 1980년대 후반 실질임금의 급속한 상승이 산업에 미친 영향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훨씬 컸을 뿐만 아니라 임금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도 노동집약업종은 자본집약산업에 크게 뒤졌기 때문이다. 즉 자본·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의 경우 기술향상과 시설확충, 해외시장개척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었으나, 노동집약적 업종은 임금상승이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더욱 심한 불황을 겪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이러한 어려운 국내 巨視經濟狀況 때문에 급격한 대개도국 GSP 공여는 국내경제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속하고도 전반적인 GSP도입은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아직도 GSP를 도입할 만한 수준에 도달

하지 못하였다는 논거로서 위와 같은 여건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적절한 시기가 무루익을 때까지 이의 시행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최적도입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서고 貿易收支 혹은 經常收支가 균형으로 돌아서거나 적어도 지속가능한 적자수준(GDP의 1.5%이하)으로 개선되고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여야만 GSP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시점의 결정은 또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과 연관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려운 여건에서 GSP를 우선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기에는 대상국가수와 대상품목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도입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國內經濟與件이 보다 안정화된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제도를 도입한 후 빈번하게 제도를 수정하거나 特惠供與幅(품목수, 특혜비율, 대상국가수)을 줄이거나 세이프가드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IV. 主要國 制度의 構成項目別 內容 比較

1. 受惠 對象國

일반적으로 수혜대상국(beneficiary countries)은 모든 개발도상국이라 할 수 있지만, 개도국의 객관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GSP 공여국의 여러가지 국내여건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GSP공여국들이 독자적으로 수혜대상국을 지정한다. GSP受惠對象國은 통상적으로 개도국 중에서 지정되지만, 국가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독립국가와 마찬가지로 GSP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

1995년 현재 미국은 148개, 일본은 172개, EU는 170개의 國家·屬領·地域聯合體에 GSP를 공여하고 있다. 또한 각국은 이들 중에서 소득수준이 극히 낮은 국가들을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 LLDC)으로 분류하여 더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LLDC들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품목별·국별 수혜제한을 받지 않으며, 일반 수혜국들이 일정수준의(관세율이 영이 아닌) 특혜관세를 부담하는 품목에 대하여도 무관세 혜택을 받도록 특별대우를 규정한다. 1992년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의 전체 관세부과 수입 중 LLDC산 제품의 비중은 1%미만이며, GSP수혜 수입의 1.2%로 나타나는 등 LLDC산 제품의 비중이 매우 낮아, GSP공여국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상태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특혜제한의 필요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EU는 49개, 일본은 41개, 미국은 40개국을 최빈개도국 목록에 포함하고 있다.

최빈개도국 외에도 EU는 마약 퇴치에 적극적인 남미 5개국을 별도로 분류하여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美·日·EU를 비교할 때, 미국은 일본과 EU보다 더 많은 개도국을 GSP공여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中國에 대해서 일본과

EU는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미국은 수혜대상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미국과 EU는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공여하지 않고 있다.

〈表 13〉 美國·日本·EU의 GSP受惠 對象國 比較

	국 명
일본과 EU는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미국은 공여하지 않는 국가	알제리, 브루나이, 쿠바, 가봉,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리비아, 멕시코, 몽고,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카타르, 한국, 사우디, 싱가포르, 시리아, UAE,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라오스, 리베리아, 모리타니아, 미얀마, 수단, 아르메니아, 중국, 마이크로네시아, 조지아, 모르도바, 마살군도, 투르크메니스탄, 홍콩
EU와 미국은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공여하지 않는 국가	코모로, 지부티, 에스토니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과 일본은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EU는 공여하지 않는 국가	체코, 헝가리, 이스라엘, 폴란드, 슬로바키아, 터키
일본은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미국과 EU는 공여하지 않는 국가	대만, 전 유고
미국은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EU와 일본은 공여하지 않는 국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EU는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은 공여하지 않는 국가	아제르바이잔, 몬테니그로, 나우루, 타지키스탄, 에리트리아

資料 : UNCTAD,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 List of Beneficiaries*, 1995.5.1(KIET(1996)에서 재인용).

한편 OECD 국가들의 GSP제도에서는 ASEAN 회원국, ANDE - AN 그룹 등 일정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개도국 국가들의 그룹을 규정하여 이들 국가 제품이 원산지판정에서 유리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러한 국가그룹의 경우, GSP수혜를 위해 요구되는 원산지 판정에서 이들 국가그룹내의 부가가치 혹은 가공활동 모두를 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인정해 주므로, 이들 국가들의 GSP수혜 가능성을 높여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1) 美國 GSP

美國의 경우 GSP수혜 적격대상국(eligible countries for GSP)의 지명과 철회는 대통령의 포고(presidential proclamations)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시행된다. 적격대상국이라는 용어는 외국, 외국의 속령 및 신탁통치지역 등을 의미하며, 자유무역지역, 관세지역 등의 국가연합이나 경제통합체의 경우 1개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적격대상국의 지명시 다음 국가들은 법적으로 제한된다.

- ① EU회원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모나코, 스위스, 북구 등 지정된 선진국
- ② 공산권 국가(미국으로부터 MFN 대우를 받는 국가와, GATT, IMF 회원국 등인 경우는 적격대상국으로 지명이 가능함)
- ③ 세계경제에 심각한 교란을 야기하는 효과를 유발하는 협약에 참여한 국가
- ④ 미국 외의 타 선진국 제품에 차별적인 특혜대우를 부여하여 미국의 통상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국가
- ⑤ 미국시민 혹은 관련 법인의 재산소유 및 통제권을 몰수·압류 국유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국가
- ⑥ 테러 관련국가와 마약 관련국가 (단,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이익에 부합된다고 판정되는 경우 적격대상국 지명이 가능함)

미국은 1995년 현재 알바니아, 앙골라 등 122개 독립국가 및 케이만군도와 마카오 등 26개의 비독립국가 및 속령 등 총 148개 국가 혹은 속령을 미국 GSP의 수혜국으로서 지정해 놓고 있다. 수혜국의 조정과 졸업에 관해서는 다음 절의 해당부문에 보다 자세히 설명된다.

이들 중에서 지역협력체를 형성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일부 국가 군들은 후술하는 원산지규정의 적용 등에 있어서 하나의 나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 판정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있다.

- Andean 그룹(Member Countries of Cartagena Agreement)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페루 및 베네즈엘라
- ASEAN(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일랜드¹⁵⁾
- CARICOM(Member Countries of the Caribbean Common Market) : 안티구아 앤드 바뷰다,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몬트세라트, 세인트 키츠 앤드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앤드 그레네이던스, 트리니다드 앤드 토바고¹⁶⁾.

또한 148개 개도국중 방글라데시와 베닌 등 40개 국가·속령은 최빈개도국으로 구분하여 지명하고 있다.

(2) EU GSP

EU는 170개 국가 및 지역에 GSP를 공여하면서, 美·日보다 많은 49개 국가 및 지역을 최빈개도국 목록에 포함시켜 특혜의 폭을 크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EU는 보다 발전된 사회정책·환경정책을 수행하는 국가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는 ① 國際勞動機構(ILO)협정의 노조결성권(87조), 단체협상권(98조) 및 어린이노동(138조)을 효과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국가와 ② 國際熱帶林機構(ITTO : 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Organization)에서 정한 열대림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련기준을 효과

15) ASEAN 회원국중 부르네이 다루살람과 싱가포르를 제외됨.

16) 회원국중 바하마는 제외됨.

적으로 준수하고 있는 국가 등이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이 국가에게 특별인센티브가 부여된다.

(3) 日本 GSP

日本은 경제가 개발도상에 있는 UNCTAD 가맹국으로 관세에 관해 특혜를 받기를 희망하는 국가 중 그 특혜를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政令에 정하는 국가를 수혜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때 개발도상국의 판정은 GSP혜택을 공여하는 일본이 판정하는 이른바 자기선택의 원칙에 따르고 있다.

일본은 당초 131개국을 수혜국으로 지정한 이래 현재 187개 개도국에 대하여 GSP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GSP 제도를 도입한 이래 수혜국을 추가한 경우는 많으나 수혜를 배제한 경우가 매우 드물어 제도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 對象品目과 例外品目

GSP의 特惠對象品目(product coverage)은 당초 원칙적으로 제품 또는 반제품으로 하였다. 다만 가공 또는 반가공된 일차산품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GSP 검토초기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이 크게 대립되었다. 개도국은 이를 포함하자는 입장이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다.

또한 대상품목의 선정방법에는 크게 포지티브 시스템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GSP적격품목 리스트에 있는 품목만이 GSP 수혜대상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例外品目目錄(exception list)에 적시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이 GSP 수혜대상이다. UNCTAD 特惠特別委員會에서는 공산품에 대해서 네거티브 리스트제를 통하여 특혜대상품목을 제시하기로 합의하였지만, 각국

이 이 합의대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공여국들이 자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품목선정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상품분류 방법으로는 대체로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분류체계를 따른다. 미국의 HTSUS (Harmonized Tariff System of US)나 EU의 CN(Combined Nomenclature) Code도 근본적으로는 HS분류에 따른 것이다.

GSP 대상품목을 선정함에 있어, EU와 일본은 공산품과 농수산품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정하지만, 미국은 농수산품과 공산품의 구분 없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단일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1) 美國 GSP

미국의 GSP제도는 농수산품과 공산품의 구분없이, 모든 종류의 품목에 걸친 단일한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GSP수혜 적격품목을 공표하고 있다.

1996년 현재 HTSUS 8단위 기준으로 4,468개 품목이 GSP 수혜 적격목록(GSP list of eligible articles)에 명시되어 있다. 수혜적격 품목과 국가의 조정과정과 고려요소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年例檢討

미국정부는 GSP대상품목과 수혜대상국가의 목록을 GSP소위원회(GSP Subcommittee)를 통하여 매년 검토하여(annual review), 조정하고자 하는 품목과 국가는 매년 7월이나 8월의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다.¹⁷⁾ 이렇게 조정된 내용은 다음해 7월부터 발효한다. 수혜적격 품목과 국가의 조정을 원하는 이해당사자는 GSP소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다. 연례검토를 원하는 년도의 6월까지의 청

17) 그밖에도 수혜한도 조치에서 설명되는 바와 같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경쟁력조건(competitive need limits)에 의한 수혜정지와, 품목별 졸업 등에 의해서 해당국가에 대하여 해당품목의 수혜가 조정될 수 있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연례검토의 청원은 공청회와 무역정책 관련 행정부처간의 협의에서 충분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연례검토를 거친 조정은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포고에 의해 이행되며 연방관보에 게재된다.

② CSP 請願

USTR이 제시한 GSP청원의 모델(GSP Model petition)에 의하면,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정보와 배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우선 一般情報(general information)로서 ① 청원자의 성명, 청원자가 대표하는 회사명, 협회명, 그리고 GSP와 관련된 청원자의 이해 ② 이해관계가 있는 품목 혹은 품목군(HTSUS 번호와 품목명) ③ 요청하는 조치, 그 조치의 이유 설명 및 그 배경정보 ④ 이번 청원의 이유와 정보가 과거에 貿易政策實務委員會(TPSC : Trade Policy Staff Committee)에 제출된 적이 있는지의 여부 ⑤ 청원이 수용될 경우 청원자가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일반정보 외에도 다음과 같은 背景情報(supporting information)가 요구된다. 첫째, 기존의 GSP 수혜적격품목에 대하여 이를 제외하거나 제한하거나 일시정지를 요청할 경우(Request to withdraw, limit or suspend eligibility)에는, 최근 3년간의 해당산업에 대하여 ① 회사들의 명칭과 위치 ② 실제 생산량 ③ 생산능력과 가동상태 ④ 고용(고용자 수, 유형, 임금 등) ⑤ 판매(수량, 금액, 단가) ⑥ 수출수량과 금액 및 주요 수출시장 ⑦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수익률(생산라인별 이윤 데이터 포함) ⑧ 비용분석(원자재, 노동력과 간접경비 포함) ⑨ 미국 국내산업의 경쟁력 상황 설명 ⑩ 경쟁기업의 적시, GSP 수혜수입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⑪ 「1974년 貿易法」의 제501조에 제시된 요인들에 관한 정보(외국시장에서의 판매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확인 등) ⑫ GSP 소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 등 여타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신규품목을 GSP수혜 적격품목으로 지정하거나 (to desi -

gnate new articles) 경쟁력조건에 의한 수혜제한의 적용을 면제하고자(to waive competitive need limits)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청원을 하는 주요 수혜국 및 기타 주요수혜국 공급자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정보로서 ① 주요 수혜국별 공급자의 확인 ② 기업들의 명칭과 위치 ③ 실제 생산수치와 GSP가 수혜될 때 예상되는 생산증가 ④ 실제 생산능력과 가동상태 및 GSP가 수혜될 때 예상되는 증가량 ⑤ 고용수치와 GSP가 수혜될 때의 고용 변화 ⑥ 판매수치(수량, 금액, 가격) ⑦ 해당품목의 총수출(주요시장 포함), 유통, 그 시장에서의 기존 관세특혜, 총 수출수량, 금액 및 그 추세, ⑧ 대미 수출의 수량, 금액 및 가격에 관한 정보, 여타 수혜국의 대미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고려요소들, 수혜국 산업의 발달정도와 생산 및 판매촉진활동의 추세에 관한 정보 ⑨ 비용분석(원자재, 노동, 간접경비 포함), ⑩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익성, ⑪ 단위가격에 대한 정보와, 가격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과 용도의 변이와 같은 여타 고려요소 ⑫ 외국정부나 외국정부가 통제하는 기업체가 청원하는 경우에는, 수혜적격 품목·국가의 조정이 청원하는 국가의 경제발전을 어떻게 촉진하는지에 관한 언급, ⑬ 필요하다면 GSP의 35% 부가가치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지에 관한 평가 ⑭ GSP 소위원회가 요구할 수도 있는 정보 등 기타 관련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③ GSP受惠適格 品目 調整時 考慮事項

GSP수혜적격 목록의 조정 시 GSP 소위원회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한다. 첫째, 이 조정조치가 해당국가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미치는 영향, 둘째, 여타 선진국들이 해당국가의 해당품목의 수입에 대해서 GSP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취하고 있는 비교가능한 노력의 정도, 셋째, 동종품목이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의 미국생산자들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 넷째, 적격품목에 대한 GSP수혜, 개도국의 경쟁력 정도 등이 검

토된다.

이에 더하여, GSP 수혜적격 품목의 조정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는, 해당국가의 ① 미국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접근 허용, ② 미국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 ③ 무역왜곡적 투자관행의 철폐, ④ 무역왜곡적 수출관행의 철폐, ⑤ 국제적인 노동자 권리의 준수¹⁸⁾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審査機關

GSP 관련 주요 이슈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주관하여 조정하는 부처간 무역정책위원회에서 검토되며, 무역과 직접 관계되는 모든 行政部處(농무부, 상무부, 노동부, 국무부, 재무부, 國際貿易委員會(USITC), 國際開發處(USAID), 행정관리예산국(OMB), 관세청, 법무부)는 GSP적격품목 조정을 위한 부처간 검토과정에 참여한다. 이들 부처들은 GSP 소위원회에 대표를 참여시키며, 이 소위원회는 USTR이 주관하며 GSP의 매일매일의 운영을 유지한다.

GSP 적격리스트의 모든 변경은 대통령이 승인한다.

⑤ GSP 受惠適格 지정의 不可品目

모든 품목이 GSP 적격품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GSP 품목지정이 금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섬유,¹⁹⁾ 시계, 신발류, 핸드백, 여행용 가방, 작업용 장갑, 기타 가죽의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수입민감 품목으로 판정된 품목은 적격품목이 될 수 없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철강, 유리 및 전자제품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18) 졸업제도 부문을 참조.

19) 예외적으로, GSP 수혜국이 아래 품목에 대하여 자국에서 생산된 수제품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기로 미국과 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GSP 수혜적격이 될 수 있는데, 이에 5701.10.13(수제 카펫트 등), 5702.10.10(수제 용단 등), 5702.91.20(जू트로 만들어진 직조 카펫트) 등 6개 품목이 있음.

(2) EU GSP

대상품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EU는 최근 GSP 제도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였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의 개정 GSP에는 과거와는 달리 쿼타, 무관세 수입량 한도, 실링 등 수량측면의 특혜한도가 없어졌다. 바꾸어 말하면, GSP가 적용되는 한 수량제한이 없이 관세상 특혜가 공여된다. 다만, 제품의 민감도를 감안하여 특혜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즉 특혜세율이 자동적으로 “0”은 아니며, 각 품목에 정해진 민감도 등급에 따라 특혜세율이 0~MFN세율의 85% 수준으로 조정된다.

관세율 조정 메커니즘(tariff modulation mechanism)의 기준과 범위는 다음과 같이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준민감품목, 비민감품목 등 4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 ① 超敏感品目(Very Sensitive Products) : EU 역내산품이 수입 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으로서 실크, 울, 면, 인조 필라멘트사 및 단섬유, 카펫, 편직 및 뜨개질 편물, 의류 등 섬유 및 의류(EU의 관세분류 코드인 CN²⁰⁾ 50류~63류)와 합금철(CN 7202)이 이에 속한다. 이들 품목에 대한 GSP적용세율은 EU의 공동관세율(Common Customs Tariff)의 85%로 한다. 따라서 특혜마진은 최혜국관세율(EU 공통관세율)의 15%로서 4개품목군 중 가장 낮은 비율의 특혜마진이 주어진다 할 수 있다.
- ② 敏感品目(Sensitive Products) : 화학제품, 신발류, 전자제품, 자동차, 식탁 등 부속용품, 시계, 조명기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특혜세율은 최혜국관세율의 70%로서, 특혜마진은 최혜국관세율의 30%이다.
- ③ 準敏感品目(Semi-Sensitive Products) : 민감도가 낮은 품목

20) CN(Combined Nomenclature, 연합분류)은 6자리까지는 HS분류와 같음.

으로서 칼륨비료, 합성유기 착색제, 우산류·지팡이, 유리 및 유리제품, 증기터빈, 냉장고, 공작기계 등 매우 다양한 품목들이 이에 포함된다. 이 품목들의 GSP 세율은 최혜국관세율의 35%로서, 특혜마진은 최혜국관세율의 65%이다.

- ④ 非敏感品目(Non-Sensitive Products) : 민감도가 가장 낮은 품목으로서 모자류, 철강제 강시판, 니켈과 제품, 의료용 가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품목들은 완전 무관세가 적용된다.

關稅率調整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수혜국가의 경쟁력보다는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민감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조정된 특혜관세율은 모든 수혜국에게 적용된다. 다만 최빈개도국과 마약퇴치국(Countries Combating Drug Trafficking)²¹⁾에게는 모든 GSP품목에 대하여 無關稅惠澤을 부여한다. 이렇게 결정된 민감도 품목목록과 특혜세율은 1998년말까지 유효하며 그 이후에 적용될 목록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다. 1998년말까지의 기간 중에 품목목록과 특혜세율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세이프가드 조항에 따른 것이다 (제3절 참조).

EU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GSP수혜 품목을 구분하지만, 원칙적으로 GSP를 공여하지 않는 품목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있다는 점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제라고 볼 수 있다. EU는 GSP 공여시 EU역내 생산자에게 심각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소위 基礎產品(primary products)으로서 GSP가 공여되지 않는 품목을 GSP 규정의 부속서 IX에 열거하고 있다. 기초산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품목에는 식염, 석탄, 갈탄,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기타 1차형상의 철과 비합금강, 알루미늄, 아연 등이 포함된다.

21)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안데안 그룹 국가들로서 마약생산과 마약거래 및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문제를 퇴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국가를 지칭함.

農産物에 대해서 EU의 GSP제도는 과거에는 민감품목과 비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으나, 1996년 7월 이후에는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준민감품목, 비민감품목으로 나누어 운용한다.

(3) 日本 GSP

日本은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선정한다. HS 4단위 기준으로 일본은 77개 농수산품을 GSP 품목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수입개방품목중 그 리스트에 올라있지 않은 129개 품목은 GSP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반면 공산품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일본은 원칙적으로 모든 공산품을 GSP 대상품목으로 하되, 일본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본정부가 GSP 공여대상에서 제외할 품목을 결정하는 방식(네거티브 시스템)으로 GSP 대상품목을 설정한다. 1995년 현재 HS4단위 기준으로 공산품 중 25개 품목은 GSP특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일본은 GSP대상 공산품 중에서 일본 국내산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특혜폭을 줄여서 부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選擇品目(SP : selected products)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4) 特惠마진

미국, 일본, EU는 모두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상품목과 수혜대상국에 따라서 특혜의 폭이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은 모든 GSP 대상품목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한다.

그러나, EU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구분된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준민감품목 및 비민감품목에 대하여 각각 EU 공통 관세율의 85%, 70%,

35% 및 0%의 수준으로 GSP관세율을 정한다. 즉, 상기 분류의 품목에 대하여 각각 15%, 30%, 65% 및 100%의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셈이다. 따라서 비민감품목만이 무관세 혜택을 받는다. 농산물의 경우 비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물량한도 내에서만 GSP혜택을 부여하는데, 관세인하의 폭은 해당품목의 민감도에 따라서 공산품과 같이 15%, 30%, 65%이다.

EU는 특혜를 받는 개도국들이 경제발전의 질을 높이는 보다 나은 사회정책과 환경정책들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수단들을 GSP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에 따라, 1995년에 개정된 GSP에 특별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해당 개도국들이 상기의 사회·환경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할 수 있도록, 특별인센티브제도에 의한 추가적인 특혜를 해당국가에게 공여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國際勞動機構(ILO)협약과 열대림목재에 관한 ITTO 규약을 준수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경우, 이 국가들에게 추가적인 특혜를 공여한다는 원칙이 EU의 GSP규정 제7조와 제8조에 명문화되었다. 사회적 인센티브규정(제7조)은 노동조합의 자유화와 단체교섭권을 정한 ILO협약 제87조와 제98조 및 아동노동에 관한 제138조를 그대로 준수하는 국가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명시하였다. 환경적 인센티브 규정(제8조)에 따라 EU는 지속가능한 열대림 관리에 관한 ITTO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 국가에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

이들 조항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특혜)의 마진은 ILO, WTO, OECD 등 국제기구가 산정한 것에 기초하여 1997년말에 확정되는데, 최고 25%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그때까지 적절한 마진설정을 위하여, 이들 국제기구와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인센티브 규정의 시행절차는 1997년말까지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하는 안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이 절차의 목적은 이들 조항의

적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국가들과 그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또한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절차를 준비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준비가 1997년말에 완료되고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日本은 공산품과 농산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혜세율을 정한다. 공산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지만, SP품목(67개 품목)의 경우 일반 관세율 대비 50%만을 인하하여 특혜세율이 결정된다. 농수산품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개별품목별로 一般關稅率 對比 10~100%의 범위 내에서 관세가 부분적으로 인하되거나 완전히 면제(100% 인하)된다.

위와 같은 부분적 특혜만이 제공되는 품목의 경우에도, EU와 일본 공히, 최빈개도국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없이 無關稅惠澤을 부여하고 있다.

3. 受惠의 制限

GSP공여국은 GSP가 자국산업에 미치는 심각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GSP공여를 제한할 수 있다. 개도국 상품이 선진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지도록 선진국들이 관세상 혜택을 준다는 당초 취지를 고려하여, GSP공여국은 필요시 GSP특혜의 공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GSP수혜를 제한하는 제도는 수혜대상품목 중 국내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혜한도를 미리 설정해서 운용하는 사전 실링제와, 수혜한도없이 제도를 운영하다가 수혜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는 등 일정한 발동여건이 되면 그때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사항은 이러한 수혜제한 조치들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있지만, GSP제도의 安定性(stability of schemes)을 크게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제도의 안정성은 ① 각종 수혜배제(졸업조항 포함)의 발동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라는 기준과 ② 기본적인 GSP 수혜적격성이 품목간 혹은 부문간에 다르게 정해지는 빈도라는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즉, 수혜배제 혹은 졸업의 조건이 불가측적으로 변하거나 수혜적격성의 기준이 품목마다 복잡하게 다르다면, 그 제도의 안정성은 그만큼 낮을 것이며 따라서 수혜개도국은 GSP 활용에 덜 적극적인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국내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세이프가드조치와 사전 실링제를 가지는 경우에도, 그것이 GSP제도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요구받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요 GSP공여국들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일본의 경우 세이프가드 규정을 채택하고 있으나, 세이프가드 적용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한 예는 거의 없으며, 대신 특정특혜공산품을 지정하여 매년도 特惠限度(실링)를 미리 설정하여 특혜수입의 규모가 이 수준에 달하면, GSP 특혜를 당해연도 말까지 정지하는 사전 실링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있으나, 이를 실제로 활용한 적이 없다. 다만 미국은 특정 수혜국의 특정품목의 수입이 사전에 설정한 수준에 달하면 GSP수혜를 철회·정지함으로써 GSP수혜를 제한하고 있다. EU는 GATT 19조의 세이프가드조항과 유사한 GSP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1) 美國 GSP

미국은 특정 수혜국가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GSP수혜를 철회·정지·제한할 수 있는 두 개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 하나는 앞의 "GSP 적격품목 조정"에서 본 바와 같이, 업계의 청원이 있을 경우,

GSP 소위원회의 연례검토를 거쳐 조정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競爭力 條件에 의한 制限(competitive need limitation)이다.

① 競爭力 條件에 의한 受惠制限

이는 경쟁력을 갖춘 특정 수혜국의 GSP수혜 독점을 억제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개별국가가 받을 수 있는 GSP혜택의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어떤 GSP수혜 품목의 일국으로부터의 수입이 競爭力 條件限度(CNL: competitive need limits)를 넘으면, 그 국가는 그 품목에 대한 GSP수혜자격을 다음해 7월부터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된다(「1974년 무역법」 504조 C항).

미국은 1985년부터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용할 두 개의 경쟁력 조건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한도를 넘으면 GSP수혜가 제한된다.

첫째, 일반 혹은 “높은” 한도는 ① 歷年中 일국으로부터의 해당품목수입이 미국전체 수입의 50% 이상이거나(「% 한도」, percentage limits), ② 그 나라로부터의 해당품목의 수입금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금액한도」, value limits)에, 해당국가는 그 품목의 GSP수혜자격이 종료된다. 여기에서 금액한도는 매년마다 미국 GNP의 변화에 비례하여 조정되며 1994년의 경우 114.1백만달러였다 (표 14 참조).

둘째, 어떤 수혜국의 어떤 품목이 “充分한 競爭力을 갖춘(sufficiently competitive)” 품목이라고 판정되면, “낮은” 한도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① 해당품목의 미국 총수입의 25%이상이거나, ② 일반 한도에서 정한 수입한도액의 40% 수준으로 결정되는 수입금액을 넘을 때, GSP 수혜자격이 종료된다. 1996년 현재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지정된 품목·국가는 100여개에 달하며, 이에 해당되는 주요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태국 등이다(해당 품목별로 적용을 받는 국가는 상이함).

경쟁력조건이 정한 “높은” 한도이거나 “낮은” 한도에 의하여 GSP 수혜제한을 받은 품목 수는, 1996년의 경우 1,082개에 달하였다. 이 제한을 받은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칠레, 과테말라, 페루, 터키, 도미니카 공화국, 인도, 태국, 브라질, 모로코,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에콰도르, 레바논, 헝가리, 남아프리카, 크로아티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등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競爭力條件에 의한 受惠制限의 適用免除

경쟁력조건에 의한 GSP 수혜제한규정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에는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waiver).

첫째, 청원에 의한 適用免除(petitioned waivers)이다. 이해당사자는 특정 GSP수혜국에서 수입되는 어떤 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조건에 의한 수혜제한의 면제를 연례검토나 일반검토에 청원할 수 있다. 적용면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해당국의 시장개방과 지적재산권보호 정도 등을 감안해야 한다. 적용면제가 허용되면 「% 한도」와 「금액 한도」의 적용이 모두 면제된다. “낮은” 한도가 적용될 경우에 대한 적용면제가 허용될 때에는 ① “낮은” 한도의 적용을 면제하여 “높은” 한도만 적용하거나 혹은 ② 높은 한도와 낮은 한도 모두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면제를 허용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우선 적용면제 혜택을 받는 GSP 수혜국들로부터 수입되는 미국의 총 수입 금액이 미국 전체 GSP수입액의 30%를 넘을 수는 없다. 또 일인당 GNP가 5,000달러를 상회하는 국가와 미국이 공여하는 총 GSP혜택의 10% 이상을 수혜하는 국가들에게 총 GSP무관세 수입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웨이버를 줄 수는 없다.

둘째, 「1974年 貿易法」 제 504조 (d)항에 의한 적용면제(504(d) waiver)이다. 이는 이른바 GSP법 제504(d)조에 정한 바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일부 GSP수혜 적격품목에 대하여 경쟁력 조

건에 의한 수혜제한의 「% 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당초 1985년 1월에 정한 해당품목 목록은 연례검토에 제출된 청원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 이 목록에 있는 113개 품목(HTSUS 8자리 기준)들은 자동적으로 웨이버를 받는다.

셋째, 極小條項에 의한 適用免除(de minimis waiver)이다. 어떤 제품의 미국 전체수입이 아주 적을 경우(de minimis), % 한도의 적용이 면제될 수 있다. 즉 전년도 중 미국의 총수입 금액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의 경쟁력 조건의 「% 한도」를 넘어섰던 모든 GSP 수혜국에게 자동적으로 극소조항에 의한 웨이버가 부여된다. de minimis 수준은 미국의 명목 GNP의 변화에 따라서 매년 조정된다(표 14 참조). 이 웨이버는 청원에 의하여 요구될 수 없지만, 매년 이에 관한 公共意見書(public comments)가 접수되며 웨이버의 부여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다.

넷째,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용면제(least developed country waiver)이다. 미국의 GSP에서 최빈개도국으로 지정된 수혜국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경쟁력 조건에 의한 GSP 수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일시 정지된 GSP受惠의 還元

일단 GSP受惠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다가, 다음 연도에 해당국의 해당품목 수입이 경쟁력조건 한도 이하 수준에 그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해당 품목을 다시 GSP 적격으로 지정하는 절차(GSP수혜 적격성의 환원)가 취해진다. 이때 이해당사자들은 GSP 적격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경쟁력조건에 의한 수혜제한에 대한 적용면제를 청원할 수도 있다.

④ 세이프가드에 의한 GSP혜택의 철회

GSP수혜 수입의 급증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GSP혜택을 철회할 수는 있으나, 미국은 아직 GSP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 경우는 없었다.

〈表 14〉美國 GSP의 競爭力 條件의 金額限度와 極小條項 限度

(단위 : 백만달러)

연 도	“높은” 한도	“낮은” 한도	극소조항 한도	비 고
1974	25.0	n/a	n/a	“높은”한도의 기준연도 극소조항한도의 기준연도 “낮은”한도의 기준연도
1979	41.9	n/a	1.0	
1985	69.6	25.0	8.3	
1986	71.4	27.9	8.4	
1987	76.2	29.7	8.9	
1988	82.5	32.2	9.7	
1989	88.9	34.7	10.4	
1990	92.7	36.2	10.9	
1991	96.4	37.8	11.3	
1992	101.0	39.2	11.8	
1993	108.1	41.9	12.6	
1994	114.1	44.3	13.3	

資料 : USTR([http : //www.USTR.gov/reports/GSP/v15.html](http://www.USTR.gov/reports/GSP/v15.html))

(2) EU GSP

GSP수입의 급증에 따라 EU역내 생산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피해의 위협을 당할 경우, EU는 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EU의 개별 회원국의 요청 또는 EU집행위원회의 자체발의에 의하여 GSP공여를 정지하고 수입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U의 세이프가드는 GATT 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과 유사하며, GSP運營委員會(Management Committee)에 의한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절차가 이뤄지며 잠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사의 개시를 EU관보에 공고해야 하고, 조사가 종결되면 GSP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3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치의 결정기관은 EU집행위원회이다.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후 10일 이내에 해당 회원국은 집행위원회 결정의 번복을 EU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원국의

번복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EU이사회는 가중다수결 방식으로 세이프가드 조치의 번복여부를 결정한다.²²⁾

(3) 日本 GSP

日本은 모든 GSP 수혜품목에 대하여, GSP수입의 급증에 의한 국내산업피해를 막기 위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는 免責條項(escape clause) 方式을 채택하고 있으면서, 또한 사전적으로 특혜적용 한도를 정하여 운용하는 사전 실링제를 동시에 두고 있다.

工產品의 경우 GSP수입의 급증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를 막기 위하여 緊急輸入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의 적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 特惠工產品으로 분류하여 사전 실링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일본 GSP는 공산품의 경우 수혜가능 한도(ceiling)를 적용하는 품목과 한도 제한 없이 GSP특혜가 부여되는 품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다.

실링제는 해당 품목별로 연간 특혜제공 한도액 또는 수량을 사전에 설정해 놓고 이 한도에 달하면 그 이후 수입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말까지 특혜제공을 정지하는 제도이다. 실링이 적용되는 품목은 437개 품목(HS 4단위)이다.

農水產品에 대해 일본은 원칙적으로 특혜한도의 설정 없이 무제한으로 GSP를 공여하고 있으나, 세이프가드 규정을 마련하여 필요시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22) EU의 가중다수결방식(qualified majority)은 EU내 회원국의 인구비율에 따라 투표수를 배분한 후 총 87표 중 71%인 61표 이상을 얻으면 가결되는 의사결정방식임. 각 회원국별 투표수를 보면, 4대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각각 10표, 스페인 8표,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그리스는 각각 5표,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각각 4표, 덴마크, 아일랜드, 핀란드는 각각 3표,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2표임.

① 特定特惠工産品에 대한 실링의 算定方式

실링제 품목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적용될 특혜한도액이나 한도수량은 매년 사전적으로 전 회계연도말 관보에 게재된다. 실링의 산출방식은 元年基準方式과 一定率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원년기준방식이란, 1989년(平成元年) GSP수혜국으로부터의 해당 품목 수입액(기준액)에다 보충액을 더한 금액을 당해년도 한도액으로 정한다. 여기서 보충액은 이전 2개 회계연도 기간중 비GSP수혜국으로부터의 해당품목 수입액의 10%로 정의된다. 따라서 非GSP受惠國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되면 해당품목의 GSP실링한도가 증가된다. 그러나 이 방식에 따라 실링을 정하다 보면, 전년도 비GSP수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되는 경우 실링이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링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럴 때는 전년도 실링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세를 개정으로 해당 품목군내의 일부품목이 무관세로 바뀌는 경우(무관세품목은 더이상 GSP가 필요없게 됨) 전년도 실링한도를 계속하면 GSP가 계속 공여되는 품목의 특혜한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특정 특혜공산품의 범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실링한도를 새로이 설정한다.

실링한도의 산출방법으로서 상기의 원년기준방식 외에 또다른 방식인 일정율방식은 전년도 실링에 일정비율(6% 이하 즉 0%, 3%, 6%)을 증가시켜 당해년도 실링을 정하는 방식이다.

② 特定特惠工産品の 실링管理方式

특정특혜공산품의 실링을 관리하는 방식은 대장성 관세국의 중앙관리센터에서 해당품목의 수입이 일본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감안하여, 사전할당관리, 일별관리, 월별관리로 나누어 관리한다. 사전할당관리는 해당품목의 수입이 일본 국내산업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내의 수급상황이나 국민경제상 필요에 따라 사전에 품목별로 정부로부터 할당을 받은 사람이 그 범위 내에서 수입할 때만 GSP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링한

도가 적어 회계연도 초기에 수입이 집중되어 한도를 대폭 초과하는 품목에 적용된다.

일별관리는 일본 국내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에 대하여, 그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일 GSP수입량을 집계하여 실링한도의 상회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월별관리는 상기 두 관리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실링품목의 관리방법이다. GSP특혜수입 실적을 월단위로 집계하여 이를 매월 가산하여 실링한도에 달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신고되는 수입신고는 원칙적으로 특혜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¼限界條項(特定國 受惠停止 措置)

일본 GSP는 위와 같은 품목별 실링을 들 뿐 아니라, 어떤 한 수혜국이 해당품목의 전체 실링량의 ¼(25%) 이상을 점하게 되면 그 국가의 해당품목 GSP수혜를 정지함으로써, 특정수혜국의 수혜독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장치를 두고 있다.

④ 特定特惠工産品の 실링限度 彈力化措置

일본의 GSP제도는 위와 같이 품목별 국별 수혜한도를 두고 있지만, GSP공여수입이 일본 국내산업에 위협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 이 한도를 넘어서더라도 GSP혜택이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탄력화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탄력화 조치에는 품목별 전체 실링에 대한 전체 탄력화조치와 특정국에 대한 ¼탄력화조치 등이 있다.

전체 탄력화조치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촉진을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전체실링을 초과하더라도(국가별 ¼한계와는 무관하게) 특혜를 계속 적용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 탄력화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도 대장성은 일본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실링제를 적용할(특혜공여를 정지할) 수도 있다.

특정국에 대한 ¼탄력화조치란 해당품목의 전체실링의 ¼이상을 한 국가가 수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¼한계조치가 어떤 국가의 생산비중이 워낙 높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불공평할 수도 있으며

로, 이러한 경우의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국 수혜 정지 조치의 발동을 정지시키는 탄력화 조치를 의미한다. ¼탄력화조치가 발동된 경우(25%이상을 점하는 특정국가의 특혜적용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대장성은 이 조치가 일본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특혜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⑤ 農水産物에 대한 세이프가드

일본 GSP는 포지티브 리스트로 정해진 농수산 품목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실링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GSP 특혜수입이 해당 국내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는 GSP세이프가드 규정을 농수산 품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정지한 예는 없다.

4. GSP 卒業

GSP 졸업이란 그 동안 GSP 惠澤을 받아 오던 개도국이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었으므로 더이상 GSP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EU, 호주 등 많은 국가들이 GSP졸업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아직 명시적으로 졸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졸업은 國別卒業과 品目別 卒業이 있다.

(1) 美國 GSP

미국 GSP에서 졸업이란 GSP수혜의 자격을 미국 행정부의 재량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GSP제도에서 졸업은 어떤 국가가 미국GSP를 모든 품목에서 전혀 수혜하지 못하게 되어 완전히 졸업하는 국별 졸업과, 해당품목에서만 GSP수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품목별 졸업으로 구분된다.

① 國別 卒業

국별 졸업(country graduation)은 다음 두 가지 경우에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수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수혜국의 경제발전과 무역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될 때 이에 대한 검토를 거치는 경우이다.

졸업의 기준이 되는 일인당 GNP 수준은 1984년 기준 8,500달러이며, 1985년 이후의 기준(t 연도의 일인당 GNP X_t)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미국 일인당 GNP 성장률에 연동되어 결정되는데, 1994년의 경우 11,831달러였다 (표 15 참조).

$$X_t = 8,500 * (1 + \frac{1}{2}W_t)$$

(W_t = 1984년 이후 t 년도까지 미국의 일인당 GNP의 증가율)

즉 일인당 GNP가 표 15에 제시된 수준을 넘는 GSP수혜국은 2년간의 GSP 수혜폭 감축과정을 거쳐서 GSP를 졸업하게 된다.

<表 15> 美國 GSP의 國別卒業에 적용되는 1人當 GNP

연 도	1인당 GNP(달러)
1984	8,500
1985	8,763
1986	9,001
1987	9,304
1988	9,728
1989	10,149
1990	10,405
1991	10,647
1992	10,912
1993	11,389
1994	11,831

국별 졸업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된 것은 1988년 바레인, 버뮤다, 브루나이, 다루살람과 나우루 등 4개국으로서 일인당 소득수준에 의하여 졸업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4개국을 졸업시켰는데, 이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은 경제개발의 현저한 발전과 최근 무역경쟁력의 개선(remarkable advancements i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ir recent improvements in trade competitiveness)을 GSP 졸업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1995년에는 같은 이유로 말레이시아가 졸업되었다.

② 品目別 卒業

품목별 졸업(product graduation)은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즉 품목별 졸업은 ① 연례검토에서 이해당사자들이 특정국의 특정품목 졸업을 청원한 경우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하거나, ② 신규로 지정된 GSP품목에 대하여 특정국가에게 GSP수혜 자격을 제외하거나, ③ 특정국의 특정품목에 대하여 정지되었던 GSP 수혜자격을 다시 부여(redesignation)하는 것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세 번째 경우를 다시 설명하면, 경쟁력 기준에 의하여 GSP수혜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던(suspension of GSP eligibility) 품목이 경쟁력조건 한도에 미달되면 GSP수혜자격이 다시 부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때 GSP수혜를 다시 부여하지 않고 계속 정지시킴으로써, 해당국 해당품목의 GSP수혜를 졸업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③ GSP 小委員會 檢討

졸업조치를 검토하는 GSP 소위원회에서는 ① 해당국가의 전반적인 경제발전 수준 ② 해당품목에서의 해당국가의 경쟁력 ③ 해당국가의 무역, 투자 및 노동자 권리에 관한 관행 ④ GSP혜택을 계속할 경우 예상되는 미국의 관련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는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관계 등을 검토한다.

④ 一般檢討

미국 GSP 법규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1987년 1월까지 일반검토(General Review)를 시행하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일반검토는 어떤 국가의 어떤 제품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지(sufficiently competitive)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졸업과 같은 재량적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대통령은 ①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가 그 나라시장에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②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정도, ③ 보조금 등 비합리적인 수출관행을 삼가하는 정도, ④ 무역왜곡적인 투자관행을 축소해 가는 정도, ⑤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자권리를 노동자에게 허용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검토에서는 경쟁력조건에 의한 GSP수혜제한의 적용면제(웨이버)에 대한 청원도 검토한다.

1985년 2월부터 1987년 1월에 걸친 제1차 일반검토에서는 9개국의 290개 품목이 충분히 경쟁적이라고 판정하였으며, 10개국 95개 품목에 대하여 경쟁력조건에 의한 제한의 웨이버가 주어졌고 30개국에 대해서는 GSP수혜자격이 박탈되었다.

(2) EU GSP

EU는 GSP수혜를 필요로 하는 국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해당 수혜개도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그 나라의 주요 산업부문(개별품목이 아님)의 산업생산능력(industrial capacity)을 나타내는 상대적인 무역특화 등을 감안하는 部門別 國別 卒業方式을 채택하고 있다²³⁾. 판정기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3) 과거의 제도에서는 각국의 품목별 경쟁력 정도(beneficiaries' degrees of competitiveness for specific products)를 감안하여 각국의 품목별 GSP수혜의 쿼터를 적용하거나 해당국가의 해당품목 GSP수혜를 배제하는 방식을 적용하였음.

정의되는 經濟發展指數(DI : Development Index)와 品目別 相對特化指數(RSSI : Relative Sectoral Specialization Index)를 동시에 고려한다.

① 經濟發展指數

$$DI_i = \frac{1}{2} \left\{ \log \left(\frac{y_i}{y_{eu}} \right) + \log \left(\frac{x_i}{x_{eu}} \right) \right\}$$

- 단, y_i : i수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
- y_{eu} : EU의 일인당 국민소득
- x_i : i수혜국의 공산품 수출액
- x_{eu} : EU의 공산품 수출액

해당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EU의 수준에 근접할수록 그리고 그들의 공산품 수출액이 EU의 수준에 근접할수록, 상기한 지수의 값은 높아진다. 만약 EU에 대한 i국의 상대적 소득이 1/10이고 수출액이 1/20이면,

$$\begin{aligned} DI_i &= 1/2 (\log 0.10 + \log 0.05) \\ &= 1/2 (-1.00 -1.30) \\ &= -1.15 \end{aligned}$$

가 된다. 상기 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EU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Report(1993)와 UNCTAD의 Handbook of International Trade and Development Statistics(1992)을 사용하였다.

② 部門別 相對特化指數

$$RSSI_{ij} = \frac{M_{ij} / \sum_j M_{ij}}{\sum_j M_{ij} / \sum_j \sum_j M_{ij}}$$

단, M_{ij} = j국가로부터 EU로 유입된 i부문 수입액
 여기서 $RSSI_{ij}$ 는 i부문의 j국에 있어서의 相對特化指數인데, 이는 ① EU 총수입에서 j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분모)과 ② EU의 i부문 총수입에서 j국으로부터의 i부문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분자)간의 비율로 표시된다.

③ 部門別 國別 卒業의 基準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국의 해당부문은 EU의 GSP수혜에서 졸업된다.

- | | |
|------------------------|------------------|
| ① $-1 < DI$ | 그리고 $RSSI > 1$ |
| ② $-1.23 < DI < -1$ | 그리고 $RSSI > 1.5$ |
| ③ $-1.70 < DI < -1.23$ | 그리고 $RSSI > 5$ |
| ④ $-2 < DI < -1.70$ | 그리고 $RSSI > 7$ |

이 기준에 따라 졸업규정이 적용될 국가와 부문은 표 16과 같다.

④ 卒業의 方式 : 2段階 卒業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된 부문별 졸업대상국가 리스트에 따라 EU는 이들 부문과 국가에 대해서 2단계(1단계는 특혜마진의 절반 감축 ; 2단계는 특혜 완전 철폐)에 걸쳐 졸업시킨다.

2단계 졸업의 시점은 대상국가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991년 기준 일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를 초과하는 한국,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 아라비아, 오만, 브루나이, 카타르, UAE, 쿠웨이트, 바레인, 리비아, 나우루 등 12개국은 1995년 4월부터 부문별 GSP 특혜마진폭의 50%를 감축하고 1996년 1월부터 해당 부문의 EU GSP로부터 완전졸업하며, 여타 국가는 1997년 1월부터 特惠 마진이 50% 감축되고 1998년 1월부터 완전 졸업하게 된다.

⑤ 先發開途國의 卒業

EU는 이러한 부문별 국별 졸업 방식과는 별개로, 1998년부터는 선발개도국에 대해서 국별 졸업방식으로 완전히 졸업시킬 방침이다.

〈表 16〉 EU GSP의 國別 部門別 卒業 對象

부 문(CN)	국 가
25,27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리비아
28,29,30,32,33,34,35,36,37,38 (비료 제외)	중국
31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쿠라이나, 칠레
39,40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
41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태국
42,43	중국, 한국, 홍콩, 인도, 파키스탄, 태국
44,45,46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47,48,49	브라질
50~60	한국, 인도, 브라질
61,62,63	한국,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마카오, 중국
64~67	한국, 브라질,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68,69,70	중국
71	홍콩, 태국, 브루나이, 카자흐스탄
72 및 73 중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품목	브라질, 멕시코, 알바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모르도바, 러시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남아프리카, 중국
72 및 73 중 비ECSC 품목, 74-83	카자흐스탄, 러시아, 중국
84,85	한국, 싱가포르
8470, 8471, 8473, 8504, 8505, 8517~24, 852530, 8526, 8527, 8528, 852990, 8531~34, 8536, 854011, 854012, 8541, 8542	홍콩, 말레이시아
86,88,89	브라질
87	한국
90,91,92	홍콩
94,95,96	한국, 홍콩, 태국, 중국

資料 : 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4. 12. 31
(No. L 348)

이 방식에서는 상기의 졸업방식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부문을 포함하여 완전히(모든 품목) EU의 GSP에서 졸업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집행위원회는 마런 중에 있으며, 1997년중 이사회에 관련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⑥ 受惠獨占 禁止 條項

또한 EU는 소위 受惠獨占 禁止 條項(Lion's Share)을 통하여, 특정품목의 GSP공여 EU 총수입에서 특정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1996년 1월부터 해당국은 해당품목의 GSP수혜에서 졸업하게 된다. 이 Lion's Share 방식은 「2段階를 거치는 卒業」이 아니며 1단계로 바로 졸업하게 된다.

⑦ 微小條項

EU의 GSP졸업규정은 졸업 부문 GSP수혜적격 품목 수입에서 해당국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2%를 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졸업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미소조항(minimal share clause)을 두고 있다.

⑧ GSP의 條件附 撤回

EU도 GSP수혜국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이유로 그 국가에 대한 GSP공여를 철회할 수 있다. 종전의 EU GSP에서도 차별적이거나 기만적인 무역관행에 대하여 이 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이번 1995년에 개정된 新GSP에서는 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어떤 수혜국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EU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GSP의 완전 혹은 부분적 배제라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①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등 GSP제도의 적절한 행정적 요구의 불충족 ② 불공정 무역관행의 지속 혹은 UR의 시장접근 약속의 불이행 ③ ILO 협약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④ 죄수노동으로 만들어진 물품의 수출 ⑤ 마약류의 수출과 통과 및 돈 세탁에 대한 불충분한 통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EU의 新GSP규정에서는 미국의 청문회와 유사한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GSP 운영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그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하였다.

(3) 日本 GSP

日本은 특정국의 특정상품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의 국내 산업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特惠關稅의 적용을 배제하는(일시적 정지가 아님) 국별 품목별 특혜적용 예외조치의 발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일본은 아직까지 이 조치를 발동한 경우가 없다.

5. 原產地 規程

GSP受惠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수혜대상 국가에서 생산되었고 선적되었음을 증명하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해당 제품이 GSP수혜 대상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하여 原產地 判定基準, 直接運送 要件 및 證憑書類 등에 관한 규정이 원산지 규정이다.

특정지역의 제품에 대해서만 특혜를 부여하는 GSP제도에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규정의 복잡성 그리고 운영과정상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GSP 특혜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GSP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부가가치 기준과 이중실질 변형조건을 사용하고 있어, 주로 관세품목 번호가 바뀌는(세번변경) 가공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EU와 일본)에 비하여 개도국의 수출업자들에게는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가

저온다²⁴⁾. 즉 GSP특혜가 적격한 수혜국 경제에 제대로 귀착하도록 엄격히 원산지규정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개도국의 수혜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GSP의 원래 취지에 반드시 부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1) 原產地 規程의 構成要素

① 原產地의 判定基準

原產地 判定基準은 해당제품이 수혜대상 개도국에서 생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그 기준으로는 완전생산기준, 부가가치기준과 가공도기준 등이 사용된다.

㉞ 完全生産基準

完全生産基準이란 해당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전량이 해당개도국에서 획득되고 그 나라에서 가공된 경우 즉 1국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별다른 문제없이 원산지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만약 최종제품의 생산과정이 2국이상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즉 최종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외국산 원자재나 부품이 수입되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수입원자재와는 다른 물품으로 實質的 變形(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거쳐야 한다. 실질변형의 기준으로는 부가가치기준과 가공도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그 나라 제품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㉟ 附加價值基準

附加價值基準이란 수혜 개도국이 해당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해당국의 원자재와 투입노동력 등 해당국내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가 제품

24) 1992년 미국의 GSP 이용비율은 47%에 불과한데, GSP대상품목임에도 GSP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56%는 원산지규정의 확인 등 행정적 이유에 의한 수혜배제였으며 42%는 경쟁력 조건에 의한 수혜배제, 나머지 2%는 품목별 졸업에 의한 수혜배제 등으로 나타났음(UNCTAD, 1995).

의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원산지 인정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즉 해당국의 부가가치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일 때에만 그 나라 원산지로 인정받는다.

㉔ 加工度 基準

加工度 基準이란 수혜 개도국에서 가공과정을 거쳐 HS 番號(關稅 品目番號)가 바뀌어야(일반적으로는 투입재의 4단위 HS번호와 산출 품의 4단위 HS번호가 달라야)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하여 그 국가를 원산지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가공도기준을 따르는 EU, 일본, EFTA 회원국 등의 경우에도, ① 관세번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없거나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특혜관세 대우를 받는 제조과정(List A)과, ② 관세번호가 변경 되지 않더라도 수혜자격이 주어지는 제조과정(List B)을 설정하여, 가공도 기준을 보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㉕ 微小加工

또한 다음과 같은 작업공정을 微小加工 工程(minimal process)이라 하며, 대부분 나라의 GSP는 이러한 공정은 GSP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 포장 및 재포장(포장재료의 원산지를 불문함) ② 한 덩어리 상품을 여러 개로 분할 ③ 종류별· 등급별 분류, 세척, 절단, 병에 채우는 작업 ④ 상표부착 및 표시작업 ⑤ 수송이나 저장을 위한 상품의 보존작업 ⑥ 세트로 하는 작업 ⑦ 혼합 ⑧ 부분품의 단순한 조립 ⑨ 동물의 도살 등은 실질적인 변형공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㉖ “實質的 變形” 基準의 緩和措置

한편 GSP공여국들은 개도국의 GSP수혜를 늘리고 한편으로는 공여국 원자재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별도의 “實質的 變形” 基準의 緩和措置를 적용하고 있는데, ① 수혜국간 附加價值 累積制와 ② GSP 供與國産 原資材 使用分의 認定制度가 그것이다.

첫째, 附加價值 累積制(cumulative origin)란 원칙적으로 원산지규

정은 1개국 혹은 1개지역 개념에 의한 것이지만, 일부 GSP공여국들은 GSP수혜 개도국간 수출입을 통하여 이전된 원자재를 최종 수혜 대상국(최종제품 수출국)의 원자재와 동일하게 인정해 주고 있다. 濠洲,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는 모든 GSP수혜국에서 생산되어 최종 수혜국으로 수입된 모든 부가가치나 제조과정은 누적 계산하고 있으며(full and global cumulation), 미국, 일본, EFTA 등에서는 ASEAN 회원국, ANDEAN 회원국, CARICOM 회원국들 등 일부 地域經濟協力體 國家들간에만 누적을 인정하고 있다(regional cumulation).

둘째, GSP 공여국산 원자재 사용분 인정제도(donor country content rule)란 GSP공여국이 GSP수혜 개도국에서 수출된 제품의 원산지 판정에 있어서 그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자국산 원자재를 수혜개도국의 원자재로 인정하여 개도국의 원산지인정을 용이하게 해 주는 제도이다.

② 直接運送

대부분 GSP공여국들의 原產地規程은 원산지판정기준에 이어 수혜 대상 제품이 수혜 개도국에서 GSP공여국으로 直接 運送되어야 한다는 直接運送條件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수입되는 상품이 수혜개도국을 출발하여 제3국을 거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교묘한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지리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제3국 세관당국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교역이나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 단지 환적이거나 상품을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여타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③ 證憑書類

원산지규정은 原產地와 運送에 대한 적절한 證憑書類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Form A가 요구되며, 우편택송이나 여행자가 휴대한 경우 일정한도의 소액의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간편한 양식의 Form APR을 작성·제출하도록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2) 美國 GSP

① 附加價值基準과 이중실질변형 조건

미국은 원산지 인정기준으로서 기본적으로 35%의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수혜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가치와 직접적인 가공비용의 합이 해당품목의 미국세관 통과시 평가가치의 35% 이상이어야 GSP수혜자격이 주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더하여 1990년 이후 “受惠對象國에서 栽培, 生産, 또는 製造됨으로써 새롭고 다른 제품(new and different constituent materials)이 되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實質變形條件의 適用을 한층 強化하였다. 수혜대상국내 부가가치 계산에서 수혜대상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재료는 ① 수혜국에서 전적으로 재배·생산 또는 제조된 물질이나 ② 수혜국에서 실질적으로 변형된 재료만이 인정된다. 즉 附加價值基準에 비수혜국의 재료가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입된 재료가 수혜대상국 내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소위 2重 實質變形의 原則으로서, 비수혜국의 재료가 부가가치기준 35%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재료가 수혜대상국 내에서 1차의 실질적 변형을 거친 후 최종 제품의 생산공정에서 다시 한번 실질변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商品의 去來價値와 附加價値의 算定

상품의 거래가치(transaction value)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판매될 때 실제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다 다음 항목을 고려하여 산정된다. 즉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포장비용, ② 구매자 부담의 판매수수료, ③ 보조장치의 가치, ④ 판매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로얄티와 라이선스 수수료 ⑤ 수입된 상품의 재판매, 처분 혹은 사용으로부터 판매자에게 발생하는 수익금 중에서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더하여 그 품목의 가치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출항에서 미국으로의 GSP수혜 품목의 수송에 따라 생기는 운송비와 기타 비용은 해당품목의 가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부가가치 계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 산정기준에서 미국은 당해품목의 총 거래가치에 대한 수혜국내 부가가치의 비율이 35%이상이어야 당해국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한다. 이 때 부가가치는 당해 수혜국에서 생산된 원자재 가격과 가공과정의 직접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가공과정의 직접비용(direct costs of processing)은 문체의 상품을 재배, 생산, 제작 혹은 조립하는 과정에서 직접 발생했거나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모든 비용을 의미하는데, 실제로 발생한 노임, 부가급부(fringe benefits),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그리고 엔지니어링, 감독, 품질관리 및 유사한 인사관리상 비용; 형판(dies), 주형(molds), 공구의 비용과 기계 및 장비의 감가상각; 연구개발, 디자인, 청사진과 엔지니어링 비용; 점검 및 검사비용을 포함한다. 그러나 해당제품의 생산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항목이나 이윤, 일반비용 및 간접 경영비용(관리직의 급여, 재해 및 책임보험, 광고비, 세일즈맨의 급여, 커미션 혹은 비용) 등 제조비용이 아닌 모든 항목들은 직접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累積附加價値의 認定

수혜국내 부가가치의 산정에서 미국은 GSP수혜 대상국중 여러 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부가가치를 합하여 한 나라의 부가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Andean그룹(Countries of Cartagena Agreement),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CARICOM(Caribbean Common Market)의 경우 이들 연합체내의 수혜대상국가군을 1개국으로 간주하고 있어 부가가치의 누적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또한 수혜대상국이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다라도 수혜대상국 내에서 실질적 변형을 거치지 않으면 수혜국의 부가가치로 인정하

지 않는다²⁵⁾.

④ 直接運送 要件

美國은 GSP혜택을 위해서는 수혜대상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하고 있으며, GSP수혜를 위해 제출하는 신고서의 의무보유기한을 5년으로 하고 있다.

직접운송조건에 의하면, 수혜국산 물품은 ① 여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미국으로 운송되거나, 혹은 ② 여타국의 영역을 통하는 경우라면, 그 물품이 미국으로 향하는 도중에 통과국의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두 경우 모두 상업송장, 선하증권 및 선적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는 미국이 최종목적지로 나타나야 한다.

수혜개도국에서 선적된 적격물품이 餘他 受惠國의 自由貿易地帶를 경유하는 中繼貿易(entrepot trade) 물품인 경우 GSP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해당물품은 자유무역지대를 운영하는 국가의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 그리고
- ② 상품의 유별 분류(sorting), 등급구분(grading), 검사, 포장, 포장해체, 포장변경, 여타용기에의 포장, 재포장, 마크 및 라벨 그리고 표식의 부착 혹은 자유무역지대에 들어갈 때 상품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외에 어떤 작업도 가해져서는 안 된다.

25) 미국의 관세제도에는 생산분담(Production Sharing)이라고 하는 규정(관세율표의 9802.00.60항과 9802.00.80항)을 통하여, 미국내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해 주고 있음. 즉 미국내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금속제품이 해외에서 재가공을 한 후 미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을 위하여 미국으로 수입될 경우 해외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분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며, 미국에서 제조된 부품을 사용하여 해외에서 조립한 후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생산된 부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GSP원산지규정에서는 미국산부품이 수혜국내에서 실질적변형을 거치지 않는 한, 부가가치 산정에서 수혜제품의 미국내 부가가치를 배제하고 계산함.

또 수혜국에서 선적된 물품이 비수혜국의 자유무역지대를 경유하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GSP 수혜가 가능하다. ① 해당물품은 제3국에서는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있어야만 하며, ② 자유무역지대가 있는 국가에서 소매이외의 판매목적은 제외한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③ 선적, 하적, 혹은 자유무역지대에 들어갈 때 상품상태를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외의 어떠한 작업도 이뤄져서는 안되며, 그리고 ④ 지역연합체의 회원국인 수혜국을 통하여 환적된 물품에 대해서는 ②에 언급된 가공이 허용된다.²⁶⁾

② 에서 본 바와 같이,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수출을 위하여 소매이외의 구입과 재판매는 허용된다. 다만, 이러한 거래를 위해서는 두 개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s of Origin)가 요구되는데, 하나는 당 물품이 미국 GSP적격품목임을 표시하고 미국이나 자유무역지대내의 위탁판매자의 성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수혜국에서 발행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상품을 책임진 사람이나 혹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발행하고 자유무역지대 내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내용의 증명서이다.

(3) EU의 GSP

EU는 GSP수혜를 위한 조건으로 ① HS 4단위 변경 또는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 ② 직접운송 조건과 ③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원산지 판정기준은 GSP수혜국의 완전생산품과, 수입원자재가 사용된 제품인 경우에는 “充分한 加工工程”을 거친 제품이어야 한다. 충분한 가공공정의 판정기준은 稅番變更 기준 즉 해당공정을 거침으로써 HS 4단위 품목번호가 바뀌어야 한다. 물론 EU도 이러한 HS 품

26) ASEAN회원국 중 미국 GSP의 수혜국들의 상품이 싱가포르와 브루네이다 루살람을 통하여 환적되는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됨.

목분류 번호의 변경조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둔다. 우선 微小工程(minimal process)에 대해서는 원산지자격을 주지 않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별도의 원산지 취득요건을 두고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원산지를 부여한다.

EU는 ① ASEAN 6개국 ② Andean 5개국 ③ CACM 5개국 등 3개 지역그룹에 대하여 累積原產地 概念을 인정해 주고 있다. 즉 이 지역 그룹내의 여타 회원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이 어느 회원국에서 마지막 가공공정을 거칠 때, 마지막 회원국에서의 부가가치가 지역 그룹내 여타 어느 회원국을 원산지로 할 때보다 크다면, 마지막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原產地 國家로 인정한다.

또한 EU는 最貧開途國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원산지규정의 적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

(4) 日本 GSP

日本の 원산지 판정기준에서는 수입된 물품과 원자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실질적 변형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HS 4단위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로 보고 있으며(가공도 기준), 다만 부분적으로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부가가치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주요 품목별로 예외적인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로는, 식품의 경우 원산품인 원재료로부터 제조·가공된 것이어야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부가가치기준을 쓰는 경우가 있다. 화학제품도 대체로 HS번호 변경조건을 쓰면서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원재료의 비율을 50%이하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 섬유에 대해서는 제조공정을 ① 纖維原料의 제조·채취 ② 絲의 제조 ③ 織物제조 ④ 縫製品 제조의 4 공정중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일본산 원재료와 부품을 제조·가공하여 수혜개도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일본에서 수출한 원재료나 부품을 그 수혜개도국

의 원산품으로 간주한다. 원산지 누적과 관련하여 일본은 ASEAN 6 개 국가를 하나의 지역으로 보고 2개 이상의 수혜국에 걸친 生産·加工 또는 製造를 받아들여 GSP수혜국 원산품으로 자격을 부여한다.

일본도 직접운송의 원칙을 요구하지만, 예외적으로 환적, 일시적인 장치, 박람회, 전시회 등에의 출품 등의 경우에는 직접운송이 아니더라도 인정해 준다.

6. GSP制度의 安定性

冒頭에서 언급한 GSP의 기초가 되는 3원칙 즉 일반성, 무차별성, 비호혜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GSP공여국이 GSP 제도를 유지해 온 방법은 일방주의적이고 비계약적이었으므로 위의 3원칙이 항상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 특히 대부분의 GSP공여국들은 GSP특혜가 개도국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일시적인 제도로 이해하였다. GSP가 일시적인 것이라면, 수혜대상 국가와 품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또한 발전한 개도국들은 특혜에서 졸업되어야만 한다. 또한 GSP가 일방적인 것이라면, 제도의 포괄범위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관성이 유지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제도가 크게 다르고(표 17 참조), 공여국별 제도의 내용이 시간이 감에 따라 변모된 것도 그리 놀라운 결과는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GSP제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상 특혜의 부여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공업화와 경제개발을 촉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GSP제도의 장기적인 안정성이 크게 요구된다. GSP혜택에 근거하여 개도국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GSP혜택의 장기적인 안정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앞에서 언급한 주요국의 제도내용과 운영을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1) 美國 GSP

제도내용 측면에서 미국은 1993년 제2기 GSP가 만료된 후 장기간의 제3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제2기 제도를 연장하고 있으며 그것도 어떤 해에는 기한을 넘긴 후에 소급하여 적용(GSP특혜 수입에 대해서 우선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고 후에 이를 환급하는 등의 방법으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내용은 GSP프로그램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므로 결국 개도국의 경제발전의 촉진이라는 GSP의 궁극적인 가치를 낮추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만 예측가능한 GSP혜택이 수혜국 생산자의 투자와 생산증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내용 측면에서도 미국의 GSP졸업은 일인당 소득기준 외에도 “상당한 경제발전과 무역경쟁력 개선”과 같은 추상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미국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어 그만큼 제도의 투명성을 낮추는 것으로 지적된다.

(2) EU GSP

EU는 1995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1998년말까지 제도의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현재에도 연구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EU의 GSP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GSP 품목분류와 그에 따른 세율결정 방식 역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 역내산업의 민감도에 따른 품목분류 자체가 GSP의 기본취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현재와 같이 매우 낮아진 MFN 관세율 체제 하에서 특혜마진이 MFN 관세율의 15%, 30%, 65% 등으로 설정된

것은 실질적으로 특혜 품의 축소와 함께 복잡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日本 GSP

미국과 EU의 제도에 비하여 일본의 GSP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품목별 실링한도가 매년 설정되는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졸업제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품목별·국가별 GSP수혜정도도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제도운영 면에서도 일본은 1971년 GSP를 도입한 이래 10년단위로 운용하면서 현재에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의 10년간 제3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表 17〉 OECD會員國의 GSP 比較

GSP 공여국	주요 제외품목	최빈개도국	셰이프가드사용예	졸업제도 (국 별)	졸업제도 (품목별)	원산지규정의 누적제 (적용범위)	특혜 폭
호주	극소수	전부	0	명시하지않음	명시하지않음	모든 수혜국	거의 100%
오스트리아	극소수	전부	0	"	"	일부	50%
캐나다	극소수	전부	0	"	"	모든 수혜국	35%
EU	포지티브시스템	전부	0	유	유	일부	품목별 큰 차이
핀란드	상당수	대부분	0	명시하지않음	명시하지않음	일부	100%
일본	포지티브시스템	전부	0	무	무	일부	품목별 큰 차이
노르웨이	섬유류	전부	0	명시하지않음	명시하지않음	일부	100%
뉴질랜드	상당수	전부	0	유	유	모든 수혜국	80-100%
스웨덴	섬유류	전부	X	명시하지않음	명시하지않음	일부	100%
스위스	극소수	전부	0	무	무	일부	100%
미국	포지티브시스템	대부분	X	유	유	일부	100%

資料 : Mo Davenport, *Possible Improvements to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1994, UNCTAD Publication UNCTAD/ITD/8, UNCTAD, Geneva.(OECD(1995)에서 재인용).

V. 結 論

1. GSP의 評價와 展望

GSP는 무역증대를 통한 개도국의 경제발전 촉진을 그 목표로 삼고 원칙적으로 모든 개도국의 모든 가공품과 공산품에 대하여 관세 특혜를 공여한다는 취지로 UNCTAD에서 구상되었지만, 그동안 공여국의 개별국가적 입장에서 짜여지고 운영되어 왔다. 현실적으로는 GSP를 공여하는 선진국들이 자국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UNCTAD가 당초 추구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대상품목과 대상국가에 많은 예외가 있었으며 그 내용이 빈번하게 변경되었고 특혜마진 역시 다양한 수준으로 복잡하였으며 특혜 폭이 좁아졌다. 일부 공여국에서는 제도가 복잡한 내용으로 또 자의적으로 변경됨으로써, GSP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제도의 장기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손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각국의 GSP관련 제도의 내용과 최근의 여건을 감안할 때, 향후 GSP의 역할과 전망은 밝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OECD(1995)에서 제기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할 때, GSP공여국들의 획기적인 자세변화와 여건개선이 없는 한 GSP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GSP가 일부 신흥공업국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개도국 경제발전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GSP에 대한 관심이 계속 축소되어 왔다. 이는 특히 최근 미국이 GSP를 일년 단위로 운영하는 태도(종전에는 6~10년 단위로 운영)와 EU의 신GSP의 제도변경 방향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둘째, 몇몇 앞선 개도국들이 GSP혜택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높은 경제성장을 향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한 GSP졸업

압력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들이 졸업할 경우 향후 실질적인 GSP의 혜택(GSP 수혜 수출)이 줄어들 것이다.

셋째, UR과 같은 다자간 무역자유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세특혜의 마진이 크게 좁아지고 있다. 특히 공산품의 무세화 범위가 앞으로의 무역협상에서 계속 확대될 것이므로 GSP대상품목 자체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넷째, 회원국간의 역내무역자유화를 위한 지역협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협정도 증가하고 있어 NAFTA에서 보듯이 GSP에 의한 기존의 대개도국 특혜가 일거에 무의미하게 되고 있다.

물론 GSP의 중요성이 낮아지더라도, 다자간무역자유화 노력과 함께 이를 보완하는 제도로써 GSP는 유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특히 저소득개도국에 대한 GSP특혜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GSP제도가 계속되는 동안 저소득개도국들도 과거 신흥공업국으로 발전하였던 개도국들처럼 GSP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GSP제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하여 무역과 경제성장이 촉진되도록 저소득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2. 要約 및 結論

제Ⅲ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경제의 규모와 세계적인 비중, OECD가입으로 대변되는 국제적 위상변화와 우리의 경제국제화 전략의 방향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개도국에 대한 GSP특혜의 공여문제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속한 GSP도입보다는 국내의 거시경제여건과 선진국 및 주요 국제기구 움

직임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GSP의 도입시기와 제도의 구성항목별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당초 GSP의 취지에 맞는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導入時期

GSP의 최적 도입시기와 관련하여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으로 돌아서고 무역수지 혹은 경상수지가 균형으로 돌아서거나 적어도 지속가능한 적자수준(GDP의 1.5%이하)으로 개선된 후 2~3년이 지난 후에 GSP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도입시점의 결정은 또한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내용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국내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GSP를 우선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기에는 수혜대상 국가의 수와 대상품목을 최소화하여 운영하다가 점진적으로 이를 확대해 나갈

〈表 18〉 主要國의 GSP導入당시의 經濟水準

국 가	도입시기	GNP	수출/수입	세계수입	세계GDP	경상수지
		(1인당 GNP) 억달러 (달러)	억달러	비중 %	비중 %	GNP비율 억달러(%)
E U	'71.7					
(영국)		1,420 (2,554)	221/239	6.9	4.02	27.2 (1.92)
(프랑스)		1,595 (3,113)	208/213	6.2	4.57	1.6 (0.10)
(독일)		2,154 (3,574)	390/334	10.0	6.16	9.4 (0.44)
(이태리)		1,109 (2,054)	151/116	4.7	3.38	16.0 (1.44)
일 본	'71.8	2,307 (2,183)	240/198	5.7	6.62	58.1 (2.52)
미 국	'76.1	17,828 (8,177)	1,154/1,325	13.9	26.30	41.7 (0.24)
캐나다	'74.7	1,532 (6,842)	345/343	4.2	2.77	-
노르웨이	'71.10	148 (3,761)	33/44	1.2	0.36	-5.0 (-3.38)
스위스	'72.3	316 (4,938)	68/85	2.1	0.76	2.0 (0.63)
호 주*	'86.7	1,602 (9,998)	227/262	1.2	1.25	-92.0 (-5.74)
한 국	'95	4,496 (10,103)	1,251/1,351	2.7	1.09('89)	-88.2 (-1.96)

* 호주 : GSP 최초 도입연도는 '66년이나 현재도로 전면 개편한 것은 '86년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도입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려면, 국내경제여건이 보다 안정된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일단 제도를 도입한 후 빈번하게 제도를 수정하거나, 특혜공여폭(품목수, 특혜비율, 대상국가수)을 줄이거나 세이프가드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導入 시나리오

GSP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는 대내적으로는 GSP 공여가 우리경제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개도국의 무역증대와 경제개발 촉진이라는 GSP의 기본취지에 충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도입·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GSP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개략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각각이 가지는 문제점과 장점을 비교해보자.

① 早期導入후 漸進的으로 擴大하는 方案

이는 GSP제도를 상대적으로 조기에 도입하되, 비경쟁 원자재 등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품목에 대해서만 우선 GSP혜택을 공여하다가, 제도운영 과정에서 국내경제여건의 호전추세를 반영하여 점진적으로 품목수와 특혜폭을 넓혀 본격화하는 방안이다.

GSP를 조기에 도입할 때, 포함될 품목군으로는 우선 비경쟁 기초 원자재를 들 수 있는데, 이 품목들은 국내 경쟁업종이 적어 국내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품목들의 관세율은 이미 대부분 1~5% 수준으로 낮아져 있어 관세수입 감소의 폭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석유와 석탄, 밀 옥수수 등 수입규모가 큰 품목의 경우에도 중동 산유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치중되어 있어 GSP공여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다음으로는 UR에서 대폭적인 관세인하와 무세화를 약속한 품목(이른바 무세화 품목 및 관세조화 품목)이 고려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철강 전자 등 주요 공산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업계의 피해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으나, 수년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 품목들이며 또 이들 품목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적은 품목이어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안의 장점을 보면, 첫째, OECD 가입 등으로 형성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상승의 시기에 맞추어 GSP특혜를 공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입지를 높인다. 둘째, 비경쟁 기초원자재 등을 그 대상으로 할 경우, 관세수입(tariff revenue)의 감소를 제외한다면, 국내경쟁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오히려 이들 원자재 품목의 수입가격 하락으로 이 원자재를 투입재로 사용하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제도의 영향과 제도운영의 기법 등을 학습하면서 보다 나은 제도를 구상하기 위한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정적인 문제점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시행초기부터 GSP품목을 확대하라는 국제기구와 외국으로부터의 압력과 요청에 당면하게 되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둘째, GSP를 도입하고서도 GSP를 통한 개도국의 실질적인 공업화 촉진이라는 GSP의 본래취지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국제적 평가가 우려된다. 셋째, 선진국 GSP의 안정성이 논란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새로이 동 제도를 도입하는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제도를 빈번히 변경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充分한 與件造成後 本格的인 制度導入

이 방안의 개념은, 최근 국내경제의 어려움 특히 국내고용 불안, 수출부진과 수입증대 및 경상수지적자 누적 등 거시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대개도국 관세특혜의 범위와 폭은 지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중시하여, 국내 거시경제여건이 호전되는 시기와 대외경제적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GSP 공여시기를 늦추어 적정시기를 결정하되, 제도도입 초기부터 모범적이고도 본격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것이다. 즉 UNCTAD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GSP활성화와 GSP의 개선 노력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모범적인 GSP를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단기적으로 성공적인 공업화를 통해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한 한국이 국제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면키 어렵다. 그리고 아직도 경제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도입초기부터 본격적인 GSP특혜를 공여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으로는 국내경제적 부담과 제도시행상의 복잡함 등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특히 정부내 관련부처간 그리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 국내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과정과 이해조정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갑작스런 도입으로 야기될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 構成項目別 方向

그동안 선진국의 GSP운영과정을 비교검토하고 또 UNCTAD 특혜특별위원회 등에서 제기되었던 제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추구할만한 GSP제도는 기본적으로 저소득 개도국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GSP공여국의 재량으로 빈

번하게 수혜대상국, 대상품목 및 특혜 폭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산지규정, 세이프가드의 발동기준, 졸업기준 및 절차 등도 다자간 채널에서 합의된 객관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① 受惠國

모든 개도국들이 수혜대상국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일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일정수준(40%, 50% 혹은 70% 등)을 넘는 국가, 충분한 수출경쟁력을 갖춘 국가(예를 들어 한국 총수입의 5% 이상 점유국 등)와 국제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 등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GSP의 당초 취지와 같이 정상적인 저소득 개도국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전체수혜국의 범위를 정한다.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빈번한 수혜국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수혜국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근 UNCTAD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졸업이나 일시적인 수혜정지의 발동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SP도입 초기에는 수혜국의 범위를 적절한 선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빈개도국의 범위는 UN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함으로써 국제적인 객관적 기준을 최대한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인접한 아시아 지역국가들을 여타 일반(개도국)수혜국과 달리하여 특별우대하는 등 수혜국 구분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② 對象品目과 특혜마진

GSP의 대상품목은 제도도입후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우리의 거시경제 여건과 산업경쟁력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의한 품목선정이 안전할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여건이 조성되면, 공산품을 중심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네거티브 시스템 하에서 기존의 많은 GSP공여국들은 GSP수입이 자국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민간품목과 재정수입에 중요한 재정 관세 대상품목은 예외품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적합한 예외품목리스트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예외품목리스트의 품목수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외품목수를 전체품목의 몇 %이내로 엄격히 정함으로써, 불가피한 품목만이 리스트에 들어가도록 품목간에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내업계의 보호주의적 압력에 버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품목 범위 혹은 예외품목 범위의 설정은 특혜마진의 설정, 세이프가드 제도의 내용 등과 관련되므로, 이 문제들은 동시에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가지 방안으로서 대부분의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설정하고 민감도에 따라서 서로 다양한 수준의 특혜마진을 정하고 세이프가드조치를 빈번하게 발동하는 방안을 상정할 수도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당초부터 엄격한 대상품목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특혜마진 구조로 운영하고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는 바, 후자가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GSP의 취지와 UR협정 이후 MFN관세율의 하락에 따른 실질특혜마진의 축소를 감안할 때, 대상품목의 특혜관세율은 단순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공산품의 특혜세율은 원칙적으로 무관세로 하되, 다만 국내산업에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특혜마진을 MFN관세율의 50%로 정하는 민감품목 리스트를 설정하여 운용함으로써 세이프가드의 발동을 최대한 막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도입해 볼 만하다. 최빈개도국에 대해서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로 하며, MFN관세율이 5%이하인 수혜대상품목에 대해서도 모두 무관세로 하는 등의 특혜관세율 설정의 원칙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품목별 민감도의 판정은 국내생산과 고용 및 수입품 시장점유율의 변화 등을 고려하되 업계의 청원과 정부와 소비자 단체등 관련 민간단체 등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도록 한다.

③ 受惠의 制限措置

일단 수혜대상품목으로 지정되어 특혜가 공여되는 가운데, 국내산 업에 미치는 산업피해가 발생하거나 일부 수혜국에 수혜가 편중될 경우 GSP특혜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사전실링제도나 면책조항 (escape clause)에 의한 사후제한제도를 도입하되, 그 적용을 불가 피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발동을 최소화하도록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많은 공여국들의 수혜제한조치는 그 시행이 명료하지 못하여 개도국의 수출업자에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특정수혜국의 수혜편중 현상은 GSP의 당초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특정국의 각 품목 혹은 부문별로 일정비율 (25% 혹은 40%) 이상을 점하는 경우 수혜를 제한하는 원칙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④ GSP卒業制度

제도도입 초기에는 GSP졸업의 근거 규정만을 명시하고 규정의 적용은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제도운용으로 그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거나, 최근들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UNCTAD 특혜특별위원회에서의 객관적인 GSP졸업 기준이 제시된 후에 조심스럽게 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GSP졸업규정의 내용과 시행문제는 GSP수혜대상국의 범위문제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졸업규정의 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혜대상국의 범위를 좁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⑤ 原產地 規程

기존의 GSP공여국들의 GSP원산지규정의 복잡성과 행정절차의 복잡성이 최근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GSP규정은 UNCTAD에서의 최근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관점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UNCTAD에서 진행되고 있는 GSP원산지규정의 단순화와 개선을 위한 논의가 마무리되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GSP를 도입하는 경우 우선 다음 몇 가지 사항 즉,

- ① 공여국산 원자재 사용분에 대한 수혜국산 원산품으로의 인정 여부
- ② 모든 수혜개도국산 원자재 사용분을 누적적으로 인정해야 할지의 여부
- ③ ASEAN 등 일부 개도국간 지역협력체를 하나의 수혜국처럼 인정해줄지의 여부와 그때 인정할 지역협력체의 범위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단이 요구된다.

⑥ 特惠의 期間

대부분의 공여국들은 특혜공여기간을 통상 10년으로 정하고 그 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미국과 EU 등은 제도의 변경 등을 이유로 그 기간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년단위로 연장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제적 비판을 받기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입할 때는 제도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공여기간을 당초 UNCTAD의 안과 같이 10년 단위로 정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參 考 文 獻

- 관세청/한국관세연구소, 「한국무역통계연보」 각호.
- 김남두, 「미국의 무역장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23, 1992. 8.
- 김세원, 「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8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출범과 신교역체제」, 정책연구 94-05, 1994. 7.
- , 「OECD가입의 분야별 평가와 과제」, 1996. 11.
- , 「무역관련 정책 및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연구 92-02, 1992. 2.
-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의 미국 및 EC GSP졸업 영향분석 - ESCAP 용역 조사보고서」, 1990. 11.
- , 「EU의 신규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해설」, 무공자료 95-5, 1995. 3.
- , 「UNCTAD/일반특혜관세제도 해설」, 무공자료 91-73, 1991. 9.
- 산업연구원, 「GSP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996. 3.
- 손병해, 「經濟統合論」, 법문사, 1992.
- 장의태,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에 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책자료 96-04, 1996. 7.
- 한국관세연구소, 무역통계 전산자료.
- , 「실행관세율표」, 1996.
- Baldwin, Robert and Murray, Tracy, "MFN Tariff Reductions and Developing Country Trade Benefits Under the GSP," *Economic Journal* 87, March 1977.
- 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4. 12. 31 (No. L 348)
- Francois Joseph, McDonald Bradley and Nordström Haken,

- Francois Joseph, McDonald Bradley and Nordström Haken, "Assessing the Uruguay Round," Paper Presented at the World Bank Conference on the Uruguay Round and the Developing Economies, January 1995.
- Harmsen, R and Subramanian, A,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Uruguay Round," in Kirmani and Others, *International Trade Policies : The Uruguay Round and Beyond, Volume II, Background Papers*, IMF, 1995.
- Langhammer, Rolf and André Sapir, *Economic Impact of Generalized Tariff Preferences*, Trade Policy Research Centre, Thames Essay NO. 49, Gower, 1987.
- OECD, *Trade Preferences for Developing Countries : How Much are They Worth and for Whom?*, TD/TC/WP(95)22/REV1, 20 October 1995.
- Rousslang, Donald and Lindsay, John, "The Benefits to Caribbean Basin Countries from the US CBI Tariff Eliminations," *Journal of Policy Modelling*, Volume 38 Number 4, July 1990.
- Sapir, André and Lundberg, Lars, "The US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and its Impacts," in Baldwin Robert E and Krueger, Anne O., *The Structure and Evolution of Recent US Trade Policy*, Chicago University Press, 1984.
- UNCTAD, *Policy Review : Towards Revitalization of the GSP, Statistical Annex*, TD/B/SCP/13/Add. 1, September 1995.
- ,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references on its Twenty-two Session*, TD/B/SCP/16, Geneva, October 1995.

- ,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Maintenance,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Rules of Origin and Technical Assistance, Eighteenth Gener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TD/B/SCP/12, UNCTAD, Geneva, August 1995.
- ,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Maintenance, Improvement and Utilizatio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Rules of Origin and Technical Assistance, Report of the Second Ad Hoc Expert Group on the GSP*, TD/B/SCP/15, June 1995.
-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n Evaluation of US Imports under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USITC Publication 1379, 1983.
- , *Production Sharing : U.S. Imports Under Harmonized Tariff Schedule Provisions 9802.00.60 and 9802.00.80*, USITC Publication 2729, February 1994.
-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A Guide to the U.S. GSP*, USTR, Washington D.C. 1991.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6.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和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 ('90.05) | 孫讚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 서비스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求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 金學洙 |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的改善과活用方案('91.08)	蔡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生産性變化와生産性的 國際比較('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價格體系와市場經濟體制로의轉換('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91.12)	共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92.01)	鄭永祿
92-02	貿易關聯 政策 및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92.02)	共同
92-03	統獨1年の 經濟的 評價와 展望('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① 日本의 貿易障壁('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①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92.03)	蔡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② 原產地規程('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③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②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進出方案('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③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私有化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8]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貸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 ('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와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的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の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93. 03)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93. 03)	共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政策과 中日技術協力 ('93. 03)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 ('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的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의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 ('93.09)	共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 ('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 ('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 서비스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 | | | |
|-------|--|----------|
| 93-27 |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 朴成勳 |
| 93-28 |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 金時中 |
| 93-29 | CIS 域內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 朴濟勳 |
| 93-30 |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 動向과 戰略 ('93.12) | 金益洙 |
| 93-31 |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導入 現況과 政策方向 ('93.12) | 任千錫 |
| 93-32 |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 李鎬生 |
| 93-33 |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 共同 |
| 93-34 |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 表鶴吉·權喆寧 |
| 93-35 |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 朴宇熙·森谷正規 |
| 93-36 |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 吳勇錫 |
| 93-37 |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 孫正植·朴大權 |
| 93-38 |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の 擴大戰略 ('93.12) | 鄭甲泳 |
| 93-39 |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 ('93.12) | 金仁竣 |
| 93-40 |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 共同 |
| 93-41 |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 尹健秀 |
| 93-42 |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 權寧堉 |
| 93-43 | 美國시장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 12) | 崔仁範 |
| 94-01 |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 洪裕洙 |
| 94-02 |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 韓弘烈 |
| 94-03 | 統一이 東西獨의 產業立地와 產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 裴眞泳 |
| 94-04 |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 韓宅煥 |
| 94-05 | WTO出帆과 新交易秩序 : 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 共同 |
| 94-06 |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 11) | 洪裕洙 |
| 94-07 | 外國人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 11) | 王允鍾 |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ctice ('94.12)	共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을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力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產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丁相朝
94-14	外換 自由化와 換危險管理 ('94.12)	朱尙榮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產業構造變化 研究('94.12)	金龍龜·朴成勳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李正淵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 主要業種의 成果分析과 向後展望 ('95.5)	申晚秀·李掌魯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 ('95.5)	權才重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和 進入·流通障壁 : 消費財 工產品 市場을 中心으로 ('95.5)	金益洙
95-04	亞·太 經濟協力的 新構想 ('95.6)	李載星
95-05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95.10)	韓宅煥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95.10)	李昌在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開發 및 評價 ('95.12)	金寬濬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95.12)	王允鐘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 ('95.12)	李鎬生
95-10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95.12)	金益洙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95.12)	金準東·康仁洙
95-12	東北亞地域技術協力體의 構想 ('95.12)	洪裕洙
96-01	ASEAN 自由貿易地帶(AFTA)의 展開過程과 그 示唆點 ('96.04)	元容杰

- 96- 02 韓國大企業集團의 內部去來行爲와 競爭政策('96.05) 禹榮洙
- 96- 03 金融·資本自由化에 따른 金融危機 事例와 政策示唆點 ('96.08) 朱尙榮
- 96- 04 貿易과 勞動基準의 連繫('96.08) 王允鍾
- 96- 05 WTO貿易自由化的 一般均衡效果分析 表鶴吉·鄭仁教 ('96.08)
- 96- 06 保護貿易의 費用분석('96.08) 金南斗
- 96- 07 派生金融商品市場의 開放과 危險管理('96.09) 金寅培
- 96- 08 WTO 體制的 定着 新通商議題 ('96.10) 共 同
- 96- 09 APEC 貿易自由化的 經濟的 效果 ('96.11) 鄭仁教
- 96- 10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96.11) 李昌在
- 96- 11 M&A型 直接投資에 關한 研究 ('96.12) 王允鍾
- 96- 12 APEC 經濟協力과 中小企業 安炯徒 : 主要國의 中小企業政策과 中小企業協力 方案 ('96.12)
- 96- 13 新國際貿易規範下에서의 中間財 國產化政策 金泰亨 ('96.12)
- 96- 14 CGE 模型에 의한 韓國의 輸出入構造 및 巨視經濟 中期展望 ('96.12) 文錫雄·金建弘
- 96- 15 韓國의 小規模 自由貿易地帶 設立의 經濟的 妥當性에 關한 研究 ('96.12) 金泰亨·鄭仁教
- 96- 16 非市場經濟國에 대한 3個國(美國, 캐나다, 韓國)의 半덤핑 措置 研究—中國의 事例分析 ('96.12) 金完淳·嚴寅鎬

■ 政策資料

- 90- 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와 對應 ('90.01) 共 同
- 90- 02 1990年代 國際經濟環境變化와 對應戰略 ('90.06) 共 同
- 90- 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的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8) 朴泰鎬
- 90- 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的 展開 ('90.10) 蘇侖雙
- 90- 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화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 91- 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 91- 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方燐榮
- 91-04 臺灣·日本の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玄定澤
-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 同
-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金南斗·柳在元
('92.03)
-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閔充基
('92.04)
-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 92-06 EC 海運政策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 同
-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 同
-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 展望과 對應戰略 共 同
('92.12)
-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共 同
('93.09)
-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戰略과 示唆點 ('93.10) 朴濟勳
-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政策 ('93.10) 曹正錄
- 93-08 國際貿易競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11) 蔡 旭
-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濬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엔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內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共同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轉換期の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金廷洙
94-07	新3低-舊3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 ('94.05)	共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 貿易赤字國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 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產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同
94-14	서비스產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及影響 ('94.12)	李昌在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資本適正性を 中心으로 ('94.12)	曹琮和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結成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對應戰略 ('94.12)	金學洙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94-23	서비스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美國, 日本, EU의 서비스 讓許表를 중심으로 ('94.12)	禹榮洙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94-26	專門職業서비스 供給者의 資格認定 ('94.12)	金址鴻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Eugene John Park
94-28	海外資金調達의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과 示唆點 ('94.12)	張義泰
94-29	技術標準의 國際的 現況과 政策示唆點 ('94.12)	孫讚鉉
94-30	韓美通商懸案 總點檢('94.12)	崔仁範
95-01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 ('95.04)	俞鎮守
95-02	貿易과 環境 : GATT/WTO의 논의 ('95.04)	李鎬生
95-03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 形態 比較分析 ('95.05)	康仁洙
95-04	農畜產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方案 ('95.06)	姜奉淳
95-05	일본기업의 對 아시아 직접투자 ('95.06)	李東琪·李允喆
95-0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95.08)	金準東
95-07	WTO體制下의 南北韓 經濟 交流 ：南北韓經濟交流와 國際規範과의 調和方案 ('95.10)	李相萬
95-08	APEC 經濟協力과 原產地規程 ('95.10)	韓弘烈

- | | | |
|-------|---|---------|
| 95-09 | 共同研究開發과 國際的 라이선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95.11) | 俞鎮守 |
| 95-10 | 1996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5.12) | |
| 95-11 | 中國經濟의 國際化 評價 ('95.12) | 鄭永祿 |
| 95-12 | OECD 統計活動 現況과 示唆點 ('95.12) | 尹昌仁 |
| 95-13 | 北韓의 經濟實狀과 우리의 北韓經濟評價에서
제기되는 일련의 問題點 ('95.12) | 趙明濟 |
| 96-01 | APEC 主要國의 交易構造와 自由化의 經濟的 效果
('96.04) | 金尙謙 |
| 96-02 | 最近의 世界經濟動向과 主要 對外經濟懸案 ('96.06) | 共 同 |
| 96-03 |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政策課題 ('96.06) | 金時中 |
| 96-04 | 우리나라의 開途國地位 問題에 관한 研究('96.07) | 張義泰 |
| 96-05 | 國際資本移動이 國內資本形成 및 經常收支에
미치는 效果 ('96.10) | 全周省 |
| 96-06 | APEC 關稅協商과 韓國의 對應方案(案) ('96.10) | 申有均 |
| 96-07 | 1997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6.12) | 共 同 |
| 96-08 | 投資保護에 관한 國際規範 ('96.12) | 金寬濤 |
| 96-09 | 外國人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및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6.12) | 金準東 |
| 96-10 | 韓·ASEAN 貿易 및 直接投資 패턴 變化와
政策課題 ('96.12) | 元容杰 |
| 96-11 | 標準·適合 및 技術障壁 : EU의 經驗과
APEC에의 示唆點 ('96.12) | 孫讚鉉·李時昱 |
| 96-12 | APEC 비구속적 投資原則의 구속화 轉換에 對備한
主要 投資制度의 檢討 ('96.12) | 金尙謙 |
| 96-13 | 國際 資本移動의 影響과 政策對應 ('96.12) | 김인배 |

■ 세미나資料

- | | | |
|-------|-------------------------------|-----|
| 90-01 |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 共 同 |
| 90-02 |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 朴泰鎬 |

-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吳勇錫
關係變化의 展望 ('90.06)
- 90-0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The Way Ahead
('90.10) Jang-Won Suh & Jae-Bong Ro (eds.)
- 91-01 EC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91.02) 閔充基
- 91-02 Uru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Taeho Bark & Wook Chae (eds.)
- 91-03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1.12)
Jang-Won Suh (ed.)
- 92-01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 Problems and Prospects ('92.06)
Chung Ki Min (ed.)
- 92-02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Jehoon Park
- 93-01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Jin Young Bae (ed.)
- 93-02 Korea's New International Economic Diplomacy and Globalization Policy ('93.05)
Jang-Won Suh
- 93-03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93.12)
Chang-Jae Lee
- 93-04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Bak-Soo Kim
-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06) 任千錫 編
-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4.06) 金時中 編
- 94-03 新世界貿易體制와 韓國 孫讚鉉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Yoo-Soo Hong (ed.)
-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94.12)
Taek-Whan Han (ed.)
-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 ('95.04) 金時中
- 95-0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Issues and Solutions for the Future ('95.11)
Sung-Hoon Park
- 96-01 21世紀를 向한 韓·中 共同繁榮의 摸索 KIEP 北京支院
('96.02)

96- 02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 Economic Cooperation in the Yellow
Sea Rim('96.04)

Jane Khanna & Chang-Jae Lee (eds.)

96- 03 WTO 出帆 1年の 評價と 向後 展望 ('96.06) 共 同

96- 04 環渤海灣 經濟協力強化 方案 摸索('96.06) 鄭永祿

96- 05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Current Issues and Agenda for the Future ('96.10)

Ku-Hyun Jung, Jang-Hee Yoo

■ Working Paper

90- 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金廷洙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90- 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L. Y. Mytelka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me ('90.08)

91- 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郭承潑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91- 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朴泰鎬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91- 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洪裕洙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91- 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柳莊熙
Intraregional Exports? ('91.07)

91- 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ae-ho Bark
the Korean Economy ('91.10)

92- 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Jang-Hee Yoo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93- 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In-Soo Kang
Diversification Policy (ISDP) ('93.01)

93- 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Jai-Won Ryou·Byung-Nak Song

- 93- 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Sung-Hoon Park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 93- 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Wook Chae
Practices ('93.06)
- 93- 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Chung-Ki Min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 93- 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Joo-Sung Jun
Capital Mobility('93.12)
- 93- 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Yoo-Soo Hong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 93- 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Jin-Soo Yoo
Goods and Services ('93.12)
- 94- 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 for Chang-Jae Lee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7)
- 94- 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 Je-Hoon Park
Between Korea and Russia ('94.08)
- 94- 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Yoo-Soo Hong
Experience ('94.11)
- 95- 01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Jae-Joong Gweon
in Asian Developing Countries ('95.12)
- 96- 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Wan-Soon Kim
Semiconductor Firms in the Aisa-Pacific :
A Korean Perspective ('96.04)
- 96- 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 Retrospects and Prospects ('96.04)
June-Dong Kim & Yun-Jong Wang (eds.)
- 96- 03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96.04) Suchan Chae
- 96- 04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Chan-Hyun Sohn
Issues : Korea's Role and Priorities in the
WTO System('96.08)

- 96- 05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Wook Chae
Rules :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96.10)
- 96- 0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Joongi Kim·Jong bum Kim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96.12)
- 96- 07 Competition Policy and Transfer Young-Soo Woo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96.12)

著者 略歷

金南斗

1976년 서울대학교 經濟學科 卒業

1988년 美 뉴욕州立대학교 經濟學 博士

1978~89 産業研究院 研究委員

1989~95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研究委員

1995~현재 仁濟대학교 貿易學科 教授

政策研究 96-17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導入可能性에 관한 研究

1996年 12月 26日 印刷

1996年 12月 28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울市瑞草區廉谷洞300-4番地9層~12層

電話: 3460-1001 FAX: 3460-1122, 1199

登錄: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刷 남형문화(주) 전화: 503-4825

* 本報告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書 禁함.

값 7,000원